

2023년 개정



CONTENTS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 | | |
|------------------|---|
|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 2 |
| 2. 현장실습 운영 지원 | 8 |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운영

- | | |
|------------------------|-----|
|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14 |
| 2.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 28 |
| 3. 참여·선도기업 선정 | 34 |
| 4.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47 |
| 5. 사전교육 실시 | 67 |
| 6.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 71 |
| 7. 현장실습 운영 | 84 |
| 8.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 112 |
| 9. 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 123 |

III.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운영

- | | |
|----------------------|-----|
| 1.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 130 |
| 2.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형태 | 131 |
| 3.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개요 | 132 |
| 4.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 134 |
| 5.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고려 사항 | 136 |

[부록 1]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150

[부록 2]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152

[부록 3] 기업 지원 혜택 156

서식 목차

번 호	내 용	페이지
서식 1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31
서식 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32
서식 3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41
서식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42
서식 5	현장실습표준협약서	77
서식 6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81
서식 7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96
서식 8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98
서식 9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예시)	104
서식 10	현장실습 사안보고서	108
서식 11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예시)	110
서식 12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예시)	114
서식 13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115
서식 14	취업전환 동의서	118
서식 15	취업전환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예시)	119
서식 16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예시)	125
서식 17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38
서식 18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현지실사 점검표	140
서식 19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142
서식 20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143
서식 21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147

자료 목차

번 호	내 용	페이지
자료 1	교육청 ‘현장실습 세부운영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20
자료 2	참 관찰은 중소기업 목록	30
자료 3	청년친화 강소기업 목록	30
자료 4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인정 절차	37
자료 5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50
자료 6	공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주일 예시)	54
자료 7	상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개월 예시)	56
자료 8	농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2개월 예시)	59
자료 9	가사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3개월 예시)	62
자료 10	안전보건교육 관련 정보	69
자료 11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온라인 연수	69
자료 1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88
자료 13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	92
자료 14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2023년)	94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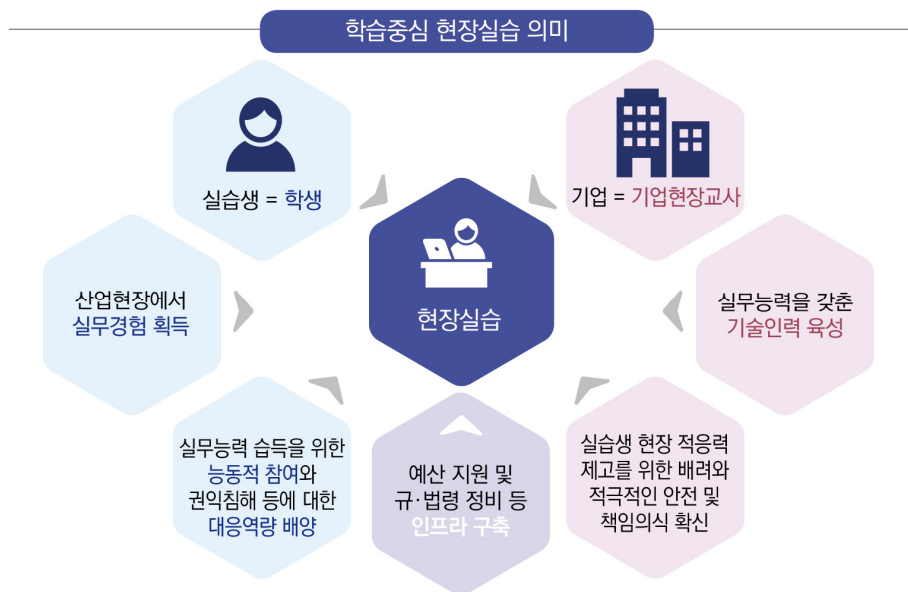
1.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해
2. 현장실습 운영 지원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항, 법률 제18425호).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1) 근로(조기취업) 중심에서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2018년)

- 현장실습 중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 계약(협약)만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 실습을 운영함.
-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배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임.
- 현장실습생은 학생이므로, 학교와 기업은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제2020-236호([부록 2] 참조)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개선사항]

구 분	근로중심 현장실습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자율(근로중심)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기간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수업일수의 1/3 범위 이내)
운영 형태	조기 취업	취업 준비과정
프로그램	없음	학교·기업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기업현장교사	없음	기업현장교사 지정 및 지도 책임 부여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혼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신분	학생, 근로자 혼용	학생
급여/수당	급여 지급	현장 실습 수당 지급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근로기준법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근로기준법 등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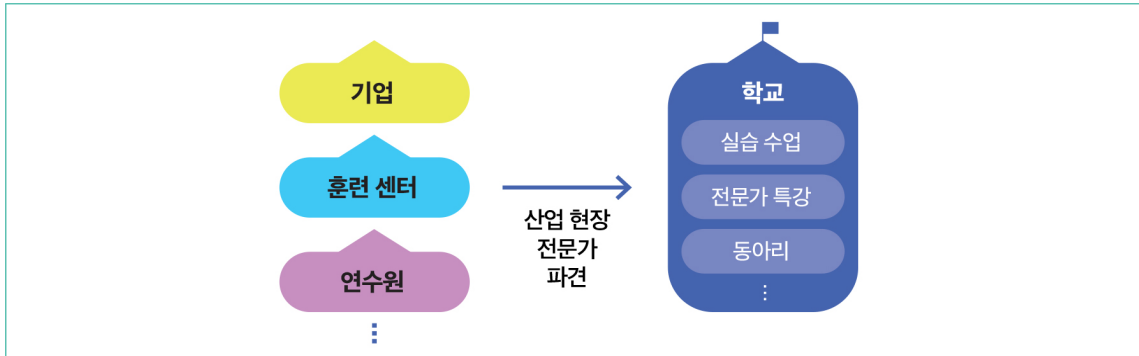
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함.
- 현장실습 교내 활동의 유형은 교내 현장실습, 교외 활동의 유형은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업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은 학생의 선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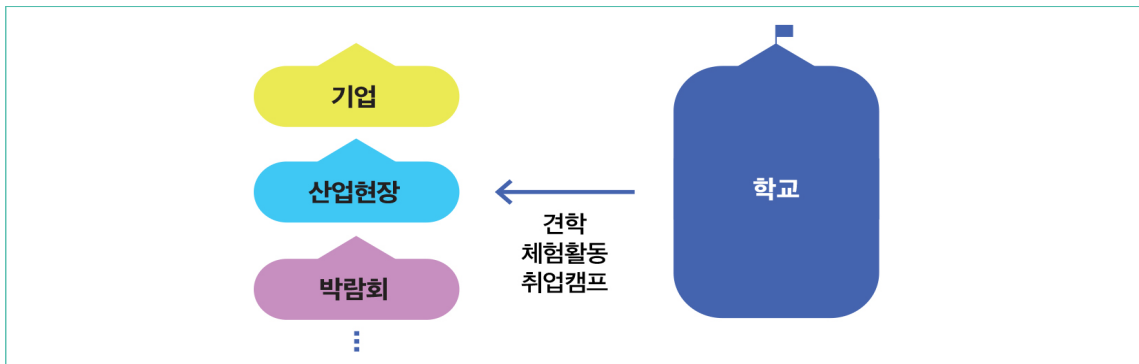
구 분	유 형	세부 활동 내용	실시시기
교내 활동	교내 현장실습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실습	1~3학년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	
교외 활동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활동하는 현장실습	

1) 교내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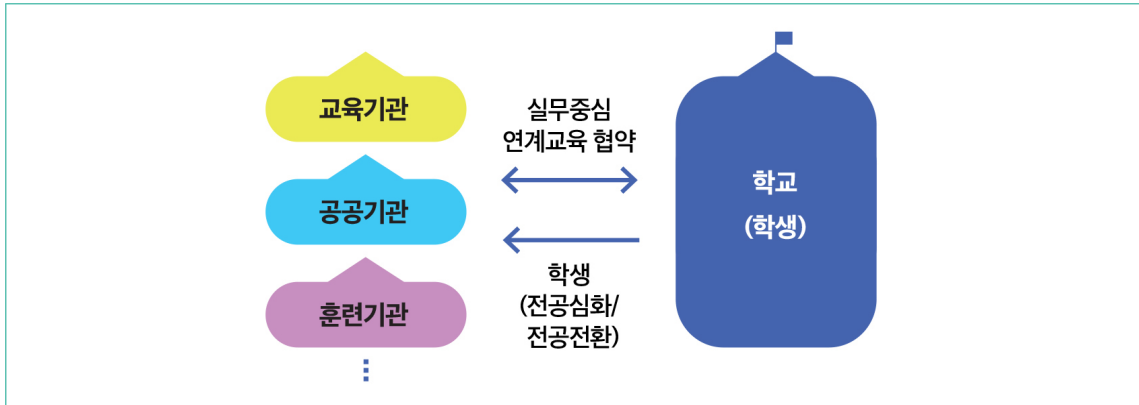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실습을 지도하는 유형임.
- 실제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 실습수업 중 일부를 집중 지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산업 현장 전문가의 학생 동아리 지도 등이 해당됨.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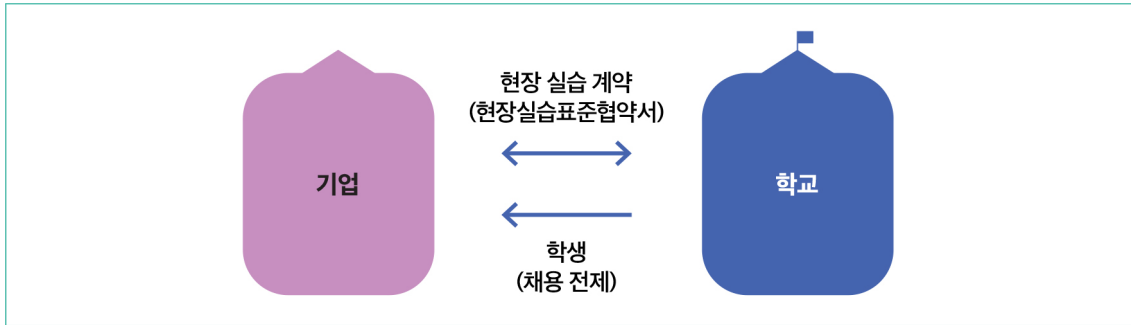
- 학생이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유형임.
- 산업현장 견학, 산업박람회 참여, 기업 연계 취업캠프 등이 해당함.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 예산에서 활용 가능함.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함.
- 출결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각종 현장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처리함.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의 기간은 2주 이내로 실시. 단,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시·도교육청 승인에 따라 2주 이상 실시 가능

3)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 교육기관, 공공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협회 등과 연계하여 실무중심의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임.
-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강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실무중심의 전공 심화교육 또는 전공 전환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기관 예: 폴리텍, 전문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공동실습소, 기업 연수원 등
-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전공과 실습 과정상의 직무가 일치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적성검사, 직무평가 등)를 거쳐야 실습 종료 후 취업전환 가능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중 전공 전환 과정의 경우, 학생의 본래 전공과 달라도 참여 가능함.
※ 단, 추후 채용연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20**,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식17**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 후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가 필요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은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함.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과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이내로 운영
※ 단, 학교가 설정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초과하여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운영 가능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임.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함.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은 총 3개월(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함.
※ 단, 학교가 설정한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을 초과한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60일)을 초과하여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필요에 따라 3개월(60일) 내에서 별도의 현장실습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 교육청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을 최대 1개월 운영 또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현장실습 참여 가능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사 제도에 대한 적용 기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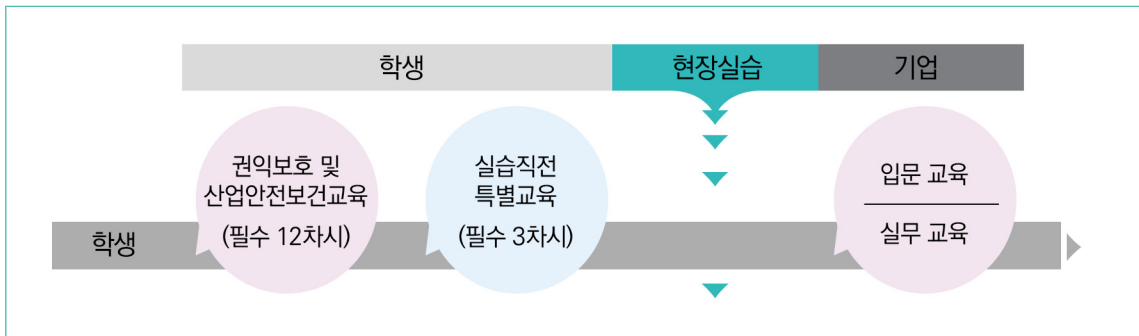
- 현장실습 제도 미적용(일학습병행법 등 자체 법령 및 제도 적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취업 맞춤형 등)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실습한 기간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용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전공과 일치해야 하므로 취업 맞춤형 모집 단계에서부터 전공과 일치하는지 확인
※ 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전문가가 학교에 와서 진행한 경우 '교내 현장실습'으로 처리 가능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적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용
※ 단,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시에 체결할 수 없음에 유의
-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적용

- 현장실습은 사전 현장실사와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또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에서만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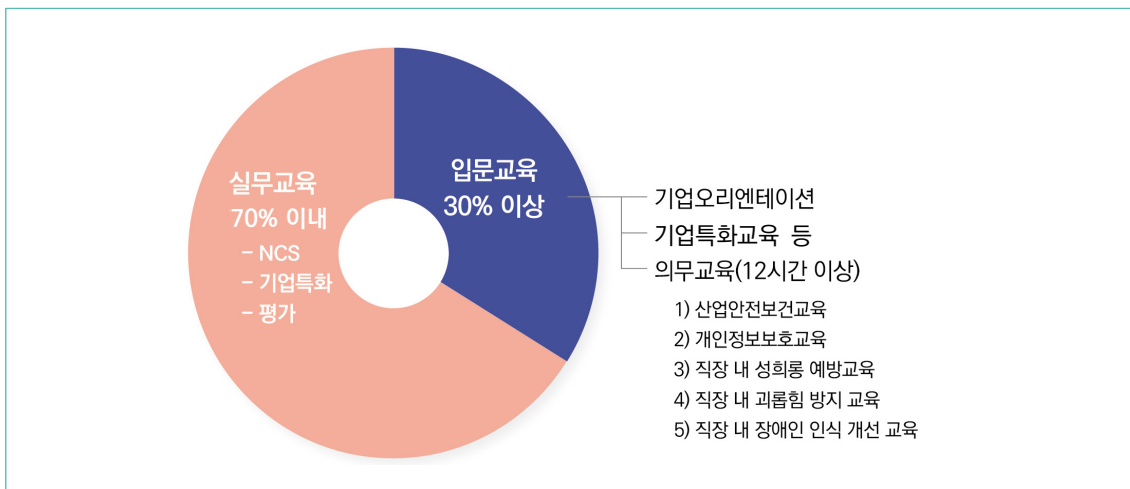
※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선정 방법은 본 매뉴얼의 “참여·선도기업 선정” 참조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승인주체	시·도교육청	학교
선정절차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선도기업 신청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심의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 안전과 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실무교육과 입문교육의 내용과 시간 구성



※ 현장실습 전체 시간 중 실무교육은 70% 이내, 입문교육은 30% 이상 편성

※ 입문교육은 의무 교육 1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

2 현장실습 운영 지원

가. 현장실습 운영비의 활용

-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수당, 기업 관계자와의 협의회, 기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비용, 순회 지도(추수지도) 수당, 현장실습 담당자(교원 및 취업지원관)의 국내외 연수비, 현장실습 담당 교원의 업무 보조 또는 담당 교원의 수업 대체 인력을 한시적(단기간)으로 채용하는 인건비 등으로 활용 가능
- 2) 원칙적으로 현장실습과 관련되거나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으로 연계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방과 후 수업료, 진로체험활동 등 현장실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 목적으로 활용 불가
- 3) 다음의 예산 활용 추가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비를 학교 및 기업 책임자 각 1명에게 1건당 5만 원 이내로 지급
 - ※ 과년도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동일한 경우 수당 지급 불가
 - ※ 과년도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여부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서 판단
 -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지원
 - 현장실습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현장실습 운영비]

항 목	내 용	지출 상한
프로그램 개발비	• (교사 및 기업관계자)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비 1건당 5만 원 이내(원고료 A4 1매당 14,000원 기준), 프로그램 개발 담당(교사와 기업담당자)에게 각각 지급	60%
기업 발굴비	• 현장실습 및 취업처 발굴을 위한 비용 - 기업체 담당자와의 기업 실태 조사비(기업 발굴에 따른 수당으로 여비와 중복 지급 가능), 현장실습 운영계획 협의회비(식비 등) ※ 지급 기준: 관내·외 3만 원(1일 최대 2회) ※ 단, 기업 전달 내역, 실태조사, 협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함. - 기업·현장실습 관련 기관 방문 시 소요 비용, 기업·기관 방문 및 현장실습생과 취업 초기 학생 격려를 위한 물품비(기념품 및 다과)	60%

항 목	내 용	지출 상한
연수비	-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를 위한 담당자의 국내외 연수 - 교육부 및 교육청이 인정·위탁한 기관에서의 연수 경비 ※ 연수 대상자 추천과 선발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0%
인건비	- 현장실습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간제 교사 또는 업무 보조 인력의 한시적 채용 경비 - 한국공인노무사회 지원 사항 이외의 추가 활용 시 수당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회 -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16만 원/시간 - 기업 방문 건당 17만 원/건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및 기업 현장 방문에 참가하는 기업 인사, 노무사, 학부모 등 외부 인사에 대한 수당 - 현장실습생 사전 교육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강비 [내·외부 전문가, 졸업(예정)자 등 활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컨설턴트의 현장실습 컨설팅 수당	60%
순회지도 (추수지도)/ 면접지원	- 현장실습 담당자의 기업 순회지도(추수지도)비 - 순회지도비 지급 기준: 관내·외 3만 원(1일 최대 2회) ※ 순회지도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으로 여비와 별도 지급 가능 - 현장실습 및 취업을 위한 학생의 면접 참여 비용 - 원거리 면접 참여 시 학생 교통비, 식비, 숙박비	40%
기타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상해(생명)보험비 - 의료기관 현장실습생의 검진 및 예방접종비 -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비 - 교내 현장실습 운영비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운영비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비 - 현장실습 동아리 지원비	60%

※ 지출 제한 항목: 현장실습 및 취업 목적과 맞지 않은 경비, 학교 기본 경비로 편성되어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실습 재료비, 비품 구입비, 시설 개선비 등), 방과후 교과교육에 대한 수당 및 간식비

나. 현장실습 수당 지급

- 1) 현장실습생은 산업현장 적응 기회로서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과 연계한 실무교육을 받으므로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실습수당을 받아야 함.
- 2)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에 따른 급여가 아닌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을 받음.

- 3) 현장실습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시간당 최소 4,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
- 4) 최저임금의 60%는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보조하여 현장실습생은 최저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실습수당을 받음.
 - 국고 및 교육청 지원 수당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급

다. 현장실습 국고 지원금

1) 현장실습 지원금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수당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수당(최저임금의 40%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최저임금의 60% 수준)를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보전함.
- 지원대상: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국적 무관)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참여한 학생
 - ※ 모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함.
 - ※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학교,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외의 현장실습 유형은 현장실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내용: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실습일당 6만 원(국고 3만 원, 교육청 지원 3만 원),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지원 180만 원)
- 신청: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현장실습 지원금],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현장실습 지원금]
 -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안내

2)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현장교사에게 실습지도 수당을 지급함.
- 지원대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 출연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현장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실습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및 교육 등의 현장교육을 수행
 - ※ 기업현장교사 1명당 현장실습생 1명을 지도하는 것이 원칙(1:1 배치)
 - ※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완료해야함

- 지원내용: 현장실습생 수에 따라 30,000원~35,000원의 실습지도 수당을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지급함.
※ 실습생 1명 30,000원, 2명 35,000원, 3명 이상 지원하지 않음(단 1:1 지도가 원칙임.)
- 신청: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지원],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안내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졸업예정자)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함.
- 지원대상: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 지원조건: ①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한 3학년 학생 중 사업기준일로부터 이듬해 사업 종료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주15시간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어야 함. ② 사업기준일로부터 30개월 내 1년(360일, 휴일 포함)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유예 및 이직 가능)
※ 신청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지원내용: 학생 1인 1회 일시금 500만 원 지급(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려금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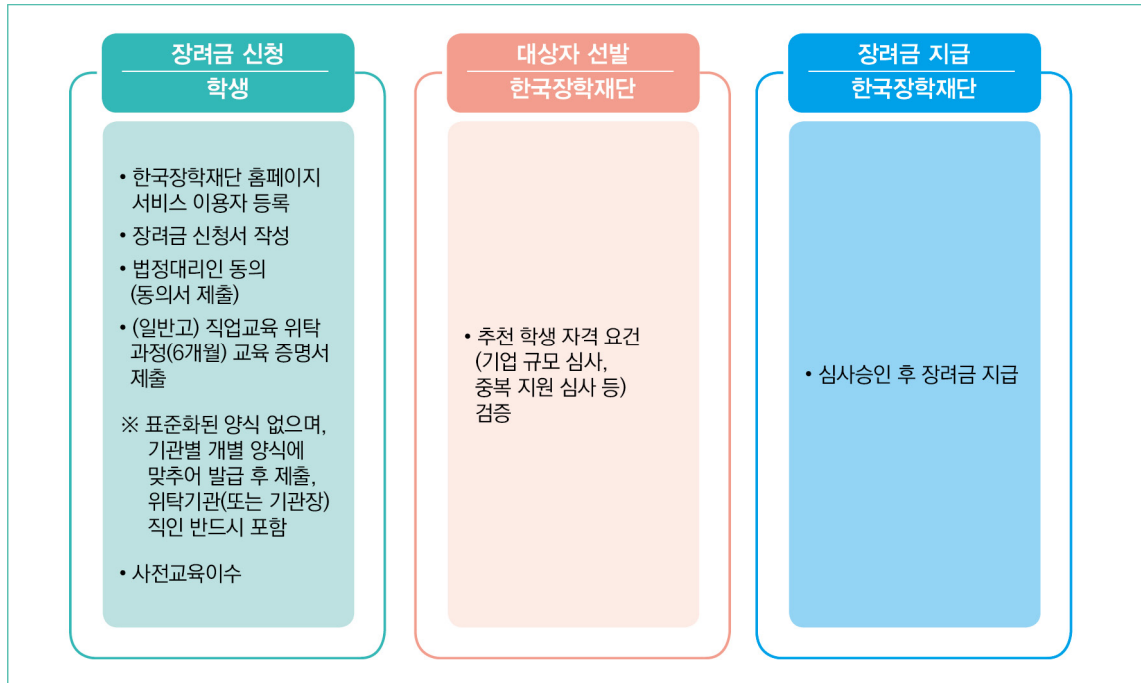
장려금 지원 의무사항

- ① 사전교육이수('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알아보기' 등 5가지 강의 수강)
- ② 학적유지(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 ③ 의무적으로 1년 이상 근무(의무종사기간 360일)

※ 단, 의무종사기간 중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이직 가능), 사업기준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해야 함.(군복무 기간 제외 및 장기입원 등 특수상황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 신청: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함.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신청 가능하므로, 모든 직업계고 학생은 취업 전이라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전 신청 권장(신청을 완료한 경우, 추후 취업 시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장려금 지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절차]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운영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2.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3. 참여·선도기업 선정
4.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5. 사전교육 실시
6.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7. 현장실습 운영
8.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9. 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 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함. 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현장실습 계획, 확인, 검토, 심의, 점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을 숙지해야 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아 구성, 운영할 수 있음.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 연계, 학사 일정, 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작성 해야 함. -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을 포함해야 함. - 현장실습 사전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장실습 순회지도(추수지도) 계획을 포함해야 함. - 현장실습 복교생 지도 계획을 포함해야 함. 라. 현장실습 운영 교육과정 편성 - 학교와 학생의 특성,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예시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예시 2 학교 전담 노무사 배정 공문 예시 예시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세부 업무 예시 4 현장실습 계획서 제출 공문 예시 자료 1 교육청 '현장실습 세부운영 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예시 5 현장실습 운영예산 집행 계획 예시 6 현장실습 순회지도 (추수지도)계획 내부결재 예시 7 '현장실습 복교생' 지도 계획 - 상담카드
관리자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해야 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협의 내용을 최종 승인함.	예시 3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세부 업무
기업 	- 현장실습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함. - 현장실습 교육 계획을 수립함.	
노무사 	- 노무사회 또는 교육청에 배정 학교를 확인함. - 학교 담당교사와 연락망을 유지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심의에 참여함. - 현장실습 기업 코칭 계획을 수립함.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

1)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현장실습 실시 전에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구성해야 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부모, 학생, 학교전담노무사를 비롯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를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고, 교직원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감), 현장실습 담당부장, 학과(학년)부장, 교무부장, 취업지원관 등으로 구성해야 함. **예시1 Q/A**

* 학생: 3학년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학생 중 선발, 학생자치회장, 기타 대표 학생 등)

* 학교전담노무사: 교육청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지정한 담당자(해당 공문 확인)로서,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여, 기업 사전 현장실사,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현장실습 기업 지도·점검 지원, 선도기업 코칭, 학생 순회지도 지원, 현장실습생 권익 침해 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예시2**

② 구성인원의 2/3 이상 충족되어야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교전담노무사(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한하여 서면 의견 제출로 참석 대체 가능)를 포함하고, 교감(장), 현장실습 담당부장, 현장실습 담당교사, 학과(학년)부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②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구성인원의 1/2 이상 충족되어야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③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외에는 심의 불가함.

④ 노무사가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석을 서면 의견 제출로 대체할 경우, 학교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사전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서면 의견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노무사 외 산업안전전문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해 사전 현장실사를 진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구성 기준	정족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원 2/3 이상 참여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1/2 이상 참여



주의사항

학교전담노무사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단, 소위원회에 한해서 서면 의견서(현장실사 결과보고서)로 참석 대체 가능)

예시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

- 가) 위원장: 교장(감)
- 나) 교원위원: 취업진로부장, 특성화교육부장(직업교육부장), 학과[학년]부장, 특수교육부담당교사, 교무부장
취업지원관 등
- 다) 학부모 위원: 정○○(○○과 3-2 김○○ 모)
- 라) 산업체 위원: 이○○ ((주)△△△ 전무)
- 마) 관계기관 위원: 최○○ (□□시 일자리센터장), 혹은 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 주임)
- 바) 학교 전담 노무사: 함○○ 노무사
- 사) 학생대표 위원: 양○○ (학생자치회장)
- 아) 산업안전 전문가: 임○○(○○지회)

예시 2

‘학교 전담 노무사’ 배정 공문 예시

○○ 교육청

수 신 수신자참조 혹은 ○○고등학교
(경유)

제 목 000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교전담노무사 배정 알림

1. 관련: 000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교전담노무사 배정 알림(○○○○과-0000, 0000.00.00.)
 2. 000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교전담노무사 배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대상/배정: 직업계고 109교/전담노무사 124명
 - 나. 운영 기간: 0000.00.00. - 0000.00.00.
 - 다. 지원내용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여
 -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 선도기업 실사 및 현장실습 순회지도 지원
 - 현장실습생 권익침해 구제 지원 등

※ 학교전담노무사 위촉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일괄 제작하여 발송 예정

 - 라. 문의 : 한국공인노무사회 과장 ○○○(☎ 02-0000-0000)
- 붙임 0000년 직업계고 학교전담노무사 배정표 1부. 끝.

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와 책무, 관계부서 협조 사항 등을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에 명시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교 현장실습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사항을 확인·점검하며, 기업 및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적부를 심의해야 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는 매 학년도 말에 1년간의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자체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차기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함.
-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 결과는 학생, 학부모, 기업 등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역할
 - ① 연간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심의 및 추진 사항 확인, 점검
 - ② 현장실습 운영비 예산 활용 계획 심의
 - ③ 당해 연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 실시
 - ④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심의
 - ⑤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신청 여부 결정
 - ⑥ 현장실습 직무 연관성 및 전공 적합성 심의
 - ⑦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적부 심의
 - ⑧ 개별 현장실습 운영건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중복성 심의 등 운영전반 협의
 - ⑨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학생 참여 적부 심의
 - ⑩ 취업전환 적부 심의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④~⑩사항에 대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의결 가능하며, 그 외는 불가함

예시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세부 업무

- 1) 현장실습 기획
 -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의, 추진 일정 점검
 - 교내 활동 계획: 사전교육, 안전교육, 예절교육, 성교육, 인권 및 노동교육 등 제반 교육 계획 포함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시기 심의
 - 현장실습 복교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 현장실습 운영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부 심의
 -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적부 심의
 - 순회지도 계획 수립
 - 현장실습 사전 교육 관리
 - 현장실습 협약에 따른 제반 서류 관리
-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산하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운영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위원 구성, 위임 사항 규정
 - ※ 위원장은 교감 또는 교장이 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기업, 실습 기간 등의 적합 여부 심의

Q & A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Q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노무사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A 노무사는 필수 참석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무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 현장실습이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교과 성적산출, 출결,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함.
- 현장실습 이수 학점(단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이수 학점(단위)을 결정함.
- 현장실습의 사전 준비, 실습, 순회지도(추수지도) **예시 6**, 현장실습 중단 및 복교 **예시 7**, 완료 및 취업전환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장실습 계획 수립 시 기존의 참여·선도기업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인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예산 **예시 5** 활용, 기업 발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함.
- 현장실습 기업풀(pool) 관리 및 신규 기업 발굴 계획이 반영된 운영 계획을 수립함.
- 학교 구성원, 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현장실습운영계획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함
-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교육 이수 내역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해야 함.
 - 학교는 학생들에게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12차시를 실시해야 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https://youth.keli.kr>)
 - 학교는 현장실습 직전 특별교육 3차시를 실시하고, 학생의 이수 여부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해야 함.
-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시·도교육청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예시 4**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간
 - 3학년 수업일수 1/3 범위(3개월)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
 - 학생의 준비상황과 기업 실습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학생)-산업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기간 설정
 - 3개월 이상의 운영이 필요할 때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전환 시기
 - (참여기업) 3학년 겨울방학 이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취업전환이 가능함.
 - (선도기업)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4주 이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전환이 가능함.
-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예시 4 현장실습 계획서 제출 공문 예시

○○ 고등학교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0000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1. 관련: 0000학년도 현장실습 정책 추진 기본 계획(○○○○과-0000)
 2. 0000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 가. 목적: 현장실습 과정 운영
 - 나. 기간: 0000. 00.00(0) - 0000. 00.00(0) 총 0일간
 - 다. 대상: 고등학교 전교생
 - 라. 내용: 붙임 참조
- 붙임 0000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1부. 끝.

자료 1 교육청 ‘현장실습 세부운영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차 례	검 토 내 용	적합	재검토
I.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요	1. 목적 및 운영 절차	가. 현장실습의 목적 및 운영절차는 「OO시·도 교육청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및 「OO시·도 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세부 운영계획」에 맞게 명기하였는가?	
	2.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 교원, 학부모,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학생, 산업안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여부	
		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하게 명시하였는가? - 현장실습 운영계획 심의 및 추진사항 확인·점검 -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 -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 적합 여부 심의 - 실습 시기 결정 - 학생 순회 지도 및 복교생 관리 -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적합여부 심의	
	3. 현장실습 세부 운영 방안	가.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나. 현장실습의 운영 유형이 제시되었는가? -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연계 교육형, 산업체 채용형	
		다.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라.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자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기에 보통교과 편성 시 보통교과에 대한 이수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마. 현장실습 담당교사는 지정되어 있고 담당교사의 업무가 명기되어 있는가?	
		바. 현장실습 자체진단 및 평가보고회 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생의 평가 계획	가. 학교의 평가 업무 담당자가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의 포함 여부 확인 - 단일 과목[예: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차 례		검 토 내 용	적합	재검토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1. 추진 절차	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추진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2. 세부운영내용	가.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선도기업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나.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선도기업 신청 기준은 명기되어 있는가?		
		다.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가?		
		라.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과 학생 매칭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마. 현장실습 실시 전 사전 교육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 사전교육은 노동관계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교육,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관한 사항		
		바.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양식은 [교육부고시 제2018-165호]를 사용(서식5 참조)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동의서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원본) 보관		
		사. 산업체 현장 점검 및 순회지도에 관한 사항은 OO교육청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따르고 있는가? -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전,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사항 점검 등 현장실습 산업체 적절성 평가 -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1회 이상 방문 순회지도 실시		
		아. 현장실습생의 안전보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제시된 조건과 다를 경우, 시정 조치(서식10 현장실습 사안보고서 작성) 및 복교조치에 관한 사항 - 복교 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협의 실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교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의 제시 - 현장실습 중단으로 인한 복교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 안전보호 및 조치를 위한 실습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자. 안전사고 발생 대처 요령은 명기되어 있는가? - 학생 보호와 치료를 최우선으로 대응 - 즉각적인 구두보고 후 서면 보고 서식10에 관한 사항		
		차. 학습중심 현장실습 이수 및 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생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차 례		검 토 내 용	적합	재검토
		- 현장실습 기업의 현장실습 확인서 및 현장실습 평가서 발급 - 개별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 만족도 평가		
		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지원 및 학생 보호 관련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전환 심의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으로 전환한 학생의 순회지도, 출결 등 관리		
	3. 현장실습 관련 서류	가. 현장실습 관련 각종 서류는 최신의 양식으로 제시하였는가?		
		나. 현장실습 관련 서류의 양식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가?		
Ⅲ. 예산집행 계획	1. 현장실습 운영비	가.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나.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계획의 예산현액이 일치하는가? - 학교 편성 금액과 예산현액 비교		
	2. 학생 안전용품 지원비	가. 학생 안전용품 지원비의 집행이 적정한가? - 현장실습생을 식별할 수 있는 용품(조끼, 배지, 모자, 머플러 등) 지원		

예시 5

현장실습 운영예산 집행 계획

■ 사업명: 0000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

■ 교부 총액: 19,000천원

■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세목	항목	산출 근거(예시)	계
현장실습 운영비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지원비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비	- 프로그램개발비: 50,000원(4매)×30건=1,500,000원	1,500
		기업 발굴비	- 기업실태조사비: 30,000원×80회=2,400,000원 - 협의회비: 8,000원×6명×20회=960,000원 - 격려물품구입비: 8,000원×110개=880,000원 20,000×100개=2,000,000원	6,240
		연수비	- 역량강화연수비: 400,000원×2회=800,000원	800
		인건비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수당: 100,000원×4명×2회=800,000원 - 외부위원산업체방문수당: 100,000원×8회=800,000원 - 특강비: 100,000원×20회=2,000,000원	3,600
		순회지도 /면접지원	- 순회지도수당: 30,000원×112회=3,360,000원	3,360
		기타	- 보험비: 10,000원×130명=1,300,000원	1,300
	소계			16,800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	안전물품 지원비	물품구입비	- 안전조끼 구입비: 17,600원×125명=2,200,000
소계				2,200
계				19,000

예시 6

현장실습 순회지도(추수지도) 계획 내부결재

○○ 고등학교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차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

1. 관련 : ○○○○과-0000(0000.00.00.), ○○고등학교-0000(0000.00.00.)
2. 2021학년도 현장실습운영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붙임1]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가. 기간 : 0000.00.00. - 0000.00.00.
- 나. 중점 지도 사항
- 1) 현장실습생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준수 확인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 현장실습생 근로시간 준수
 - 2) 학생 근태 및 인권보호 실태 확인
 -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건강, 애로사항 점검
 - 현장실습에 대한 적응 및 학생만족도 확인
 - 3)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준수 여부 확인
 -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처리
 - 4) 순회지도 대상 학과 : 디지털바이오화학과, 디지털전기와, 디지털전자과
 - 5) ○○○과 : 00월 00일 이후 현장실습 진행
 - 순회지도 계획 추후 수립 예정
- 붙임 0000년 1차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 1부. 끝.

연번	학과명	취업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실습 일자	학생 성명	담당 교사	순회지도 일시
1	○○과	(주)제일○○	경기도 시흥시 ○○○	031-498-0000	김○○	010-6338-0000	031-498-0000	2021.10.12	유○○	오○○	2021.10.19
2	○○1과	(주)아이○○○	경기도 안산시 ○○○	031-481-0000	이○○	010-2578-0000	031-481-0000	2021.10.12	고○○, 허○○	윤○○	2021.10.20
3	○○2과	(주)삼구○○	경기도 안산시 ○○○	031-412-0000	박○○	010-3300-0000	031-412-0000	2021.10.12	권○○, 이○○	한○○	2021.10.20
4	○○3과	(주)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032-472-0000	문○○	010-4602-0000	032-472-0000	2021.10.12	강○○	구○○	2021.10.14
5											

예시 7

‘현장실습 복교생’ 지도 계획 - 상담카드

		코드번호			
학 생 명		과 3학년 반 번			
회 사 명		실습일	년 월 일		
실 습 유 형	맞춤형, 일반	복교일	년 월 일		
현장실습업무내용					
복교 사유		적성불일치, 업무어려움, 대인관계 갈등, 인내력부족, 진로변경 등			
단계	지도요소	지 도 내 용	실시일자	담당교사	담당교사 확인
1일차	자기성찰 및 학생상담	◇ 복교 의견서 작성 및 상담 - 복교생의 고민과 애로사항 - 회사생활 돌아보기(장점과 단점) - 올바른 자기 이해 돕기	월 일 (시간)	담임교사	
2일차	취업동기 부여	◇ 전공관련 상담 및 취업마인드 향상 - 상담을 통한 자기성찰 - 자기 극복 및 인생지도	월 일 (시간)	학과부장	
3일차	취업지원	◇ 직장생활 적응력 강화 및 대인 관계 능력 향상 - 실습생의 의무와 권리 - 인간관계, 팀워크 갈등관리 -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법	월 일 (시간)	직업상담사 (취업전담교사 혹은 취업지원관)	
	비전제시	◇ 직업의 소중함과 재취업에 대한 도전의식 및 자신감 향상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제시	월 일 (시간)		
4일차	진로 상담 및 설계	◇ 진로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설계 - 인생의 목표와 경로 개발 - 나의 성격에 맞는 직업 찾기 - 10년 후의 자기 미래 모습	월 일 (시간)	취업진로부장	
5일차	평가 및 계획	◇ 소감문 작성 및 격려 - 복교생 특별교육 소감문 작성 - 재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 계획 - 취업성공을 위한 나의 다짐	월 일 (시간)	담임교사	
※ 교육일정은 학사일정 변경이나 학생 또는 지도교사의 사정에 따라 상호 조정하여 실시함. ※ 단계별로 이수한 후 담당교사의 확인받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취업지원부에 제출함.					

라. 현장실습 운영 교육과정 편성

-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이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교과Ⅱ의 독립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Ⅱ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현장실습을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학기에 보통교과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고,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 보통교과에 대한 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교과Ⅱ의 이수는 현장실습 이수로 대체 가능함.
- 현장실습을 교육과정(교과)에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현장실습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포함시켜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대해 평가함.
- 현장실습 기간의 실무과목(능력단위) 성적처리 방법
 - 현장실습으로 인해 평가하지 못한 능력단위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인정점을 부여하여 실무과목에 대한 성적을 처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입력함.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상황 입력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3	1	선반가공	공구선정 (1502010102_14v2)	30	88	B	① [실무과목] 선반 가공(위탁학생)
3	1	선반가공	기본작업 (1502010104_16v4)	34	93	A	② (위탁학생)
3	2	선반가공	홈·테이퍼 작업 (1502010106_14v2)	34	83	B	③ [실무과목] 선반 가공
3	2	선반가공	편심·나사 작업 (1502010107_14v2)	34	.	P	④ [실무과목] 선반 가공(현장실습)

※ 성취도 'P'가 현장실습에 따른 능력단위 이수임을 알 수 있도록 '(현장실습)'으로 기재

① 위탁기관을 통해 실무과목과 연결된 능력단위를 이수할 경우(과목단위 이수)

② 위탁기관을 통해 실무과목과 연결되지 않은 능력단위를 이수할 경우(능력단위 이수)

③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정규 교육과정 내 실무과목의 능력단위를 이수할 경우

④ 정규교육과정 내 실무과목의 능력단위에 대해 현장실습으로 인한 인정점을 부여받은 경우

※ 현장실습으로 인해 인정점이 부여된 능력단위의 성취도 산출이 불가한 경우 원점수는 '.'으로 입력하고, 성취도는 'P'로 입력함.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학생의 성적 평가(2학기 지필평가 이후)
 - 2학기 지필평가 이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수행 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교내 수행평가 내용과 지필평가로 평가함.
-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식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적용함.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함.
 -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함.
 - 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 담임교사가 작성함.
 -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함.
 - 현장실습에 대한 내용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 기계	
실습기간 : 2000.00.00. - 2000.00.00	
실습내용 :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 2000.00.00. - 2000.00.00	
실습내용 : 헤어디자인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 재료	
실습기간 : 2000.00.00. - 2000.00.00	
실습내용 : 공작기계용 부품 가공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 기타(글로벌 현장 학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 2000.00.00. - 2000.00.00	
실습내용 :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 단일과목(예: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단위(학점)와 함께 원점수(필요시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입력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 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 등을 입력함.
-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함.
-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며, 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준용하여 입력할 수 있음.

※ 이때, ‘현장실습 직무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군) 중에서 입력함.

2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취업담당 교사 혹은 취업지원관) 	가. 현장실습 기업 발굴 - 기업에 문의하여 기본 정보를 확인함. 나. 현장실습 기업 사전 방문 - 기업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함. 다. 현장실습 기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인함. -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를 작성함. 라. 현장실습기업 적합성 검토 - 전공적합도, 교육과정의 연계성, 안전확보 등 현장실습 가능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마.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인정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절차에 따름. - 체불사업주 DB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 등은 제외함.	자료2 참 관찰은 중소기업 목록 자료3 청년친화 강소기업목록 서식1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관리자 	- 담당교사 기업체 방문 출장 시 적극 협조, 지원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최종 승인함.	
기업 	-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함. - 현장실습 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함. - 학교에 기업의 기본 정보를 공유함.(현장실습(채용)의뢰서, 회사시설, 사업자등록증 등)	서식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노무사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기업을 지원함.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 기업 발굴

- 학교(교육청)는 우수기업 및 강소기업 DB, 중앙취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실습 대상 산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함.

* 기업 기본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업종, 주소 및 홈페이지, 주요 생산품, 종업원 현황, 유해기업 사업장 여부 등

- 참 관참은 중소기업 DB www.smes.go.kr/gsmb/ 접속 → [중소기업찾기] → [상세조건 검색] → [검색결과 다운로드] 활용
- 중앙취업지원센터 고졸만JOB(<http://job.kosaf.go.kr>) 접속 → [고졸채용공고], [현장실습 및 취업처], [현장실습지도] 활용
- 기업정보조회 서비스(크레포트, 크레탑 등)에서 기업 검색을 통한 신규 기업 발굴
- 지자체(시청) 일자리센터 활용
- 취업담당교사, 취업지원관 적극 활용

기업 발굴 절차

회사정보 확인 및 채용 담당자 확인 → 학교 및 방문자 소개 → 직업계고 고졸사원 채용의지 확인 → 기업 혜택 소개 → 현장실습 채용연계 및 진행절차 안내, 적합성 검토 등 →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작성
서식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나. 현장실습 기업 사전 방문

- 학교(교육청)는 현장실습 기업 발굴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을 비롯한 각종 안전교육 교재 및 자료를 현장실습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의 담당자 및 기업현장교사가 현장실습 운영과 교육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함.

실습생 전공 및 소질	현장실습 프로그램	실습시설 및 설비	후생복지 여건
· 실습분야와 실습 학생의 진로 목표간 일치성 · 단순 반복이 아닌 숙련을 위해 실습이 필요한 직무 실습 제공	· 개발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 실습목적과 실습 학생의 실습목표 일치 · 충분한 실습시간 제공	· 현장실습 목표 대비 시설/설비 적절성 · 시설/설비 최신성 및 안전성 · 시설/설비 교육 계획 적절성	· 체불사업주 DB 비탐재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고 비탐재 · 실시간 준수를 위한 업무일정 적절성

- 학교(교육청)는 발굴한 기업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직무 내용,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 실습 여건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하고,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를 작성함(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서식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 작성된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또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장실습 기업 적합성 검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 현장실습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학교(교육청)로 현장실습을 의뢰할 수 있음. **서식2**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 학교(교사)와 노무사의 역할 구분

구분		학교	노무사
현장실습 전	업무	• 현장실습 가능 기업 발굴 • 대상 기업 확정	• 기업 방문 현장실사
	점검사항	•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사 확인 •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취득,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기업 근무 환경 및 여건 관련 적격성 판단 • 기업의 산업안전, 권익보장 여부 점검
	문서작성	•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 현장실사 결과 보고서(점검결과표)
현장실습 중	업무	• 순회지도 • 상시 모니터링	• 기업 코칭(선도·참여기업)
	점검사항	• 학생 근태와 건강 상태 • 기업(현장교사)의 교육 협력	• 현장 실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문서작성	•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 학습 기업 코칭 결과 보고서

자료 2 참 관청은 중소기업 목록(www.smes.go.kr/gsmf/)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참관청은 중소기업 목록' (SMEs Portal) website. The main section is titled '상세조건 검색' (Detailed Condition Search). Below the title, there are several filter tabs: '지역' (Region), '업종' (Industry), '규모' (Scale), '기업형태' (Company Type), and '특성' (Characteristics). Each tab has a dropdown menu with various options. The '지역' tab is currently selected, showing a list of regions. The '업종' tab is also visible, showing a list of industries. The '규모' tab shows a list of company scales. The '기업형태' tab shows a list of company types. The '특성' tab shows a list of company characteristics.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in a table format, with columns for '기업명' (Company Name), '소재지' (Location), '업종' (Industry), '규모' (Scale), '기업형태' (Company Type), and '특성' (Characteristics).

자료 3 청년친화 강소기업 목록(https://www.work.go.kr)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청년친화 강소기업 목록'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 List) website. The main section is titled '청년친화 강소기업'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 Below the title, there is a sub-section titled '청년친화강소기업은!' (What is a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 The text states: '강소기업 선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여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입니다.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214개소 선정되었습니다.' (Strong small businesses are those that meet the selection criteria and have excellent wages, work-life balance, and employment stability, making them suitable for young people to work in. 1,214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es were selected in 2022). Below the text, there are three buttons: '세상정보' (World Information), '강소기업 바로가기' (Go to Strong Small Business), and '청년친화강소기업 블로그'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 Blog).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2021 청년친화강소기업 목록다운로드' (Download 2021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 List),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목록다운로드' (Download 2022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 List), and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울력' (Youth-Friendly Strong Small Business Selection Seoul Power).

서식 1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산업체명													
주소	본 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업태											종목		
4대 사회보험 가입 상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다발기업 여부	아님[]				해당[] 내용:								
유해사업장 여부	아님[]				해당[] 내용:								
교육담당자	성명								연락처				
	부서								직위				
	이메일								팩스				
현장실습 및 채용 이력	없음[]				있음[] 내용:								
현 장 실 습													
산업체 자체 교육프로그램 유무	없음[]				있음[] 교육내용:								
직무내용	직무분야 [NCS 24개 분야]				직무내용								
자격 요건													
현장실습 예정 인원													
현장실습 기간	0000년				월	일	~	0000년		월	일		
주 5일 교육 확인	Y ☐ / N ☐				주 2일 휴무일:				요일	,	요일		
현장실습 한계	총				일				시간				
현장실습 수당 지급 여부	☐ (월/일/시 _____ 원)								부지급		☐		
현장실습 지원	산재보험 적용 여부				☐ 적용, ☐ 미적용								
	중식				☐ 제공, ☐ 미제공				실습생 부담:				
	실습재료				☐ 제공, ☐ 미제공				실습생 부담:				
	기숙사				☐ 유, ☐ 무				실습생 부담:				
	통근버스				☐ 유, ☐ 무				실습생 부담:				
현장실습 후 채용 전환 계획	있음		☐		없음		☐						
취 업													
채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타[] 내용:				
채용 직무													
채용 조건	근무시간												
	근무요일								휴무일				
	급여								원 / 월				
	일학습병행제[]								중식[]				
	산업지원병역일터[]								기숙사[]				
	계약학과[]								통근버스[]				
채용 준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학교생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사본				기타				
방 문 자	성명								연락처				
방 문 일	2000년				월	일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설립일자	
업 태		종 목	
주요사업내용		홈페이지	
자본금		연매출액	억 원
직원수	명 (생산직 근로자수 명) 남: 명 여: 명		

채용 담당자	부서		전화	
	직책		Fax	
	성명		휴대폰	
			E-Mail	

모집직종	생산직군(지원부서포함)		모집인원	남 :	명 ,	여 :	명
근무부서			모 집 희망학과	0000과	남(), 여()		
직무 내용 (구체적)				0000과	남(), 여()		
				0000과	남(), 여()		
				0000과	남(), 여()		
근무형태	주5일(), 주6일(), 격주토요일(), 기타 ()		자격요건 (우대자격)	관련분야 자격()			
근무시간	() 주간 / 야간(주간근무) 주·야간교대(없음)		접수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0), 고용보험(0), 산재보험(0), 건강보험(0)						
실습수당 및 급여	실습수당	시급 / 월급 ()원			상 여	%	
	급여	시급 / 월급 / 연봉 ()원					
근로 조건	인 턴 여 부		유(개월), 무()				
	실습종료 후 취업 전환 여부		유(), 무()				
	병역특례 기업 지정 여부		유(), 무()				
	복 리 후 생		기숙사(), 통근버스(), 중식제공()				
	회사교통편(대중교통)						
기 타 요 구 사 항							

요청일: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다. 현장실습 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학교는 산업재해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에 기록해야 함.(현장실습 중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 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라.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 및 현장실습기업 적합성 검토

- 전공 적합도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가능 여부(기업교육환경 안전성, 기업교육프로그램 및 기업현장교사 유무, 취업 연계 가능성, 진로계발 경로 등)를 확인하여 기업체를 발굴함.
- 전공 적합도 인정 여부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기존 현장실습 기업의 경우 학기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자체진단 평가에서 현장실습생의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차기 학년도 기업체 적합성을 심의하여 재지정할 수 있음.

마.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인정

- 참여·선도기업은 학교 및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절차에 따름.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DB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고를 확인 후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선정함.
 - 유해기업 사업장(산재다발, 임금체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정보 확인
 - ▷ www.HIFIVE.go.kr 접속 → [참여(선도) 기업] →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 관리] 화면에서 '유해기업 상황' 항목 확인
 - ▷ www.HIFIVE.go.kr 접속 → [참여(선도) 기업] → [현장실습 유해기업 현황] 메뉴에서 유해기업 여부 확인
 - 체불사업주 DB: 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탭 클릭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메뉴 클릭
 - 산업재해 사업장 공고: 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탭 클릭 → [사전정보 공표 목록] 메뉴 클릭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클릭 후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파일에서 산업재해정보 확인

3 참여·선도기업 선정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현장실습 기업 선정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선도기업 선정의 적합성을 심의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심의된 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후보) 대상 분류, 결정함. 나.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필수 구비서류(‘세부 운영 내용’ 참조) 다.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및 절차 - 현장실습 선도기업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선도기업(후보)을 교육청에 신청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 후 심사 대기함. - 현장실습 참여기업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참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하여 현장실습 실시함. -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 절차 -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 사전 현장실사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 참여·선도기업 승인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라. 현장실습 운영 계획 설명회 개최 및 희망학생 모집 - 현장실습 운영 계획 설명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을 구분 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설명함.	자료4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인정 절차 서식3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 현장실습 희망 학생 모집 - 기업별 희망 학생을 모집함.(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 마. 현장실습 기업-학생 매칭 ◦ 학생 수요 조사를 토대로 현장실습 직무 내용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방문 과정 등을 거쳐 기업-학생을 매칭함. ※ 기업-학생간 선발의 투명성, 학생 준비 사항 지도 등 기타 매칭 준비 사항을 고려해야 함.	
관리자 	◦ 담당교사의 출장 업무를 지원함. ◦ 채용설명회 등 학생 모집 업무를 지원함. ◦ 현장실습 진행 과정을 지속적 모니터링 및 최종 승인함.	
기업 	◦ 현장실사 점검 준비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함.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교육 자료를 준비함. ◦ 기업소개서, 직무기술서 등 현장실습생에게 안내해야 하는 자료를 준비함.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위험성 평가 및 위험물 취급 관련 자료를 준비함. ◦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함. ※ 기업은 학교의 현장실습 현장실사에 협조해야 하며, 현장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선사항을 현장실습에 적극 반영해야 함.	
노무사 	◦ 노무사회 또는 교육청에 배정 학교를 확인함. ◦ 학교 담당교사와 연락망을 유지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함. ◦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 심의에 참여함. ◦ 현장실습 사전 현장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학생 	◦ 기업정보 확인 및 현장실습 희망기업을 선택함. (인터넷 검색, 견학, 기업현장교사 또는 취업담당교사 면담 등) ◦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및 면접을 준비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회원 가입함. (아이디, 비밀번호 등 확인)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 기업 선정

-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춘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함.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도기업'이라 하며, 그 외 기업은 '참여기업'이라 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선도기업 선정의 적합성을 심의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심의된 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후보) 대상으로 분류, 결정함.
- 참여기업은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선도기업은 시·도교육청별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각각 최종 승인함.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비교]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인정주체	시·도교육청	학교
선정절차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심의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현장실습 운영기간	1주(5일) ~ 3개월(60일)	1주(5일) ~ 3개월(60일)
사전 현장실사	필수	
학생 순회지도	필수	
노무사 기업 코칭	필수	선택

-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시기
 - (참여기업)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기업에서 5일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3학년 겨울방학 시작 이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취업 전환 가능함.
 - (선도기업) 현장실습 선도기업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기업 중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전환 가능함.
 -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전에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하는 경우 4주(20일) 이상 현장실습을 참여 후 취업전환(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가능

나.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필수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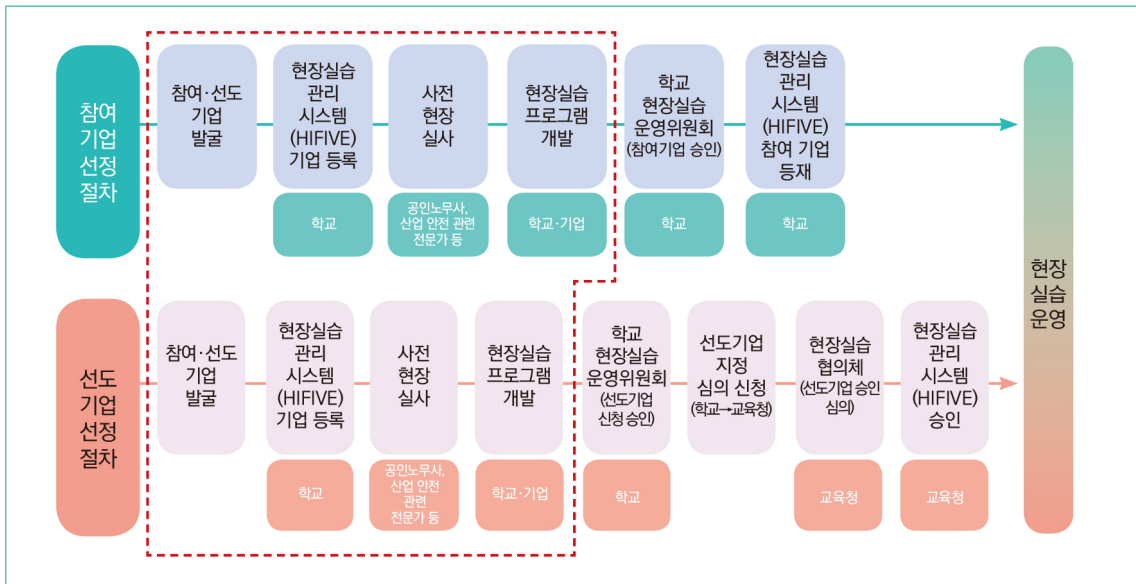
- ①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서식 1**
- ②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 3** (참여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 ③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 4**
- ④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록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 ⑥ 기업의 4대보험 가입증명원

※ ①~③은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에 등록, ④~⑥은 학교 자체 보관하여야 함

다.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절차

-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승인은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사전현장 실사, 현장실습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참여·선도기업 심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순서로 진행됨.

자료 4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인정 절차



※ 참여기업으로 지정·운영 중인 산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 추진하는 경우, 선도기업 선정 절차 중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선도기업 신청 승인 절차부터 추진함

1)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 정부부처는 관청은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세부 현황 등을 제공함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는 지역 협약기업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함.
* 지방 고용청, 중기청, 지자체 일자리센터, 지역 인자위(ISC), 지역 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업 발굴
- 학교는 기업 발굴 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서식1** 를 작성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를 현장실습 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함.

2)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 기업등록 - 산업체 방문조사카드 **서식1** 를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에 탑재함.
-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에게 사전 현장실사를 요청함.
- 학교는 선도기업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학교전담노무사의 현장실사 종료 후 기업과 상의하여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3**,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4**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을 통해 등록하고, 선도기업을 신청함.
※ 단, 참여기업으로 현장실습을 운영 중인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 가능함.
- 참여기업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에게 사전 현장실사를 요청함.

[학교 → 학교전담노무사] 사전실사 수행 가능 여부 문의

[학교 → 기업] 사전실사 통보 및 안내

3) 사전 현장실사

- 학교전담노무사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함.
- 학교전담노무사는 유해 위험 업종(건설, 기계, 전기, 화공 등)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원 등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함.
- 현장실사는 실시간 진행 노무사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주 이내 완료하고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해야 하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주가 만료되기 전에 학교에 알리고 협의해야 함.
※ 학교전담노무사는 본인이 사전 현장실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공인노무사회 또는 지역별 대표 노무사와 상의하여 대체 실시하여 1주 이내 완료해야 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참여·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는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함.
- 현장실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협조하여 실시하며, 교사 동행 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음.



현장실습 참여·선도 기업의 현장 실사 준비 사항

- 기업현장교사 지정
 -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은 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근로자 명부 준비,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준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입문(의무)교육 자료 준비
- 기업소개서, 직무기술서 등 현장실습생 안내 자료 준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 사전 현장실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선사항을 현장실습에 적극 반영해야 함.



사전 현장실사 배정 절차

- 1) (학교⇒학교전담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수행 가능 여부 문의
- 2) (학교⇒기업) 사전 현장실사 통보 및 안내
- 3) (학교전담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 학교전담노무사의 일정 수행 불가 시
 수도권 지역 학교: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노무사 배정 요청
 수도권 외 지역 학교: 대표노무사에게 노무사 배정 요청
 유해 위험 업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직원 또는 회원 배정 요청
- 4)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배정된 노무사) 가능한 자를 매칭하여 안내
- 5) (노무사⇔기업) 사전 현장실사 수행

4) 현장실습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 학교와 기업은 인력양성유형 및 전공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학습계획을 수립함.
- 학교 및 기업의 개발 책임자는 학교와 기업이 공동 개발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각각 서명·날인함.
- ※ 학교 및 기업의 현장실습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에게 각각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
- 학교는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3** 를 확정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4** 와 함께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5) 참여·선도기업 심의·인정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사전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참여·선도기업 적절성 여부를 심의함.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는 선도기업 신청서,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사전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선도기업 적절성 여부를 심의함.
※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참여기업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하고,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협의체로부터 심의 받은 선도기업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승인함.

6)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기존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의 현장실습 적합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
- 선도기업은 최초 지정 연도로부터 교육청의 별도 지정 취소가 없는 한 3년간 자격을 유지함.
※ 2023학년도에 지정된 선도기업은 2025학년도까지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함
- 시·도교육청은 선도기업의 자격 유지 만료 시점과 현장실습 계속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기업 심의·인정 절차를 통해 자격 유지 만료 전 선도기업 재선정을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매년 현장실습 실시 전 공인노무사의 사전 현장실사를 포함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함.
-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실습 환경 및 산업안전의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등으로 선도기업 인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교육청에 인정 취소를 요청함.

서식 3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 산업체 일반 현황

기업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주 업종		주 생산품	
대표자명		대표번호	
자본금, 매출액, 신용평가 등급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작성	
		상시근로자수	
회사 개요		※ 기업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작성 · · ·	

□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담당자(직위)		연락처	
현장실습 분야	NCS분야(24개)		
현장실습생 주요 직무	*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 ·		
현장실습 기간 (일/시간)	(예시) 20일, 140시간	현장실습 수요인원	명
현장실습 후 채용여부	☐ 전원 채용, ☐ 일부 채용(%), ☐ 미확정		

□ 신청교 관련 사항

관련 학과(전공)			
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핸드폰	
비고 (요청사항,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0000학년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위한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00. 00.
○○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소재지	본사		
	실습장		
기업현장교사			
현장실습 참여 학생		참여 학생 성명, 학과명	
현장실습 기간 및 일수		20○○. 00. 00. ~ 20○○. 00. 00. (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0일 / 20○○. 00. 00. ~ 20○○. 00. 00. (사유:)	
NCS 직무분야			
실습과제			
평가횟수	회	평가항목	
현장실습 시간 편성	총 시간	입문교육	실무교육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 1 : 1 전담 ☐ 비전담 1 : 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기업 담당자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만 지급될 수 있으며 단, 과년도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 용
실습생의 사전준비 상황	
주요 실습요구	
현장실습 목표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NCS / 기업특화	
	NCS 세분류 / 기업특화	능력단위 / 필요지식 및 능력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입문 교육	실무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교사 (직위)	현장 실습생	장소		
소 계								
총 현장실습 시간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반드시 입문교육 시간 안에 편성하여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은 입문시간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라. 현장실습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및 희망 학생 모집

- 학교는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함.
 - 현장실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탐방,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
 -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방법, 협약체결, 실습수당, 순회지도, 복교 등 현장실습 절차 전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함.
- 현장실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사 또는 취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면접을 진행함.
- 면접은 기업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교사 또는 취업지원관, 학생이 기업에 방문하여 진행함.

마. 현장실습 기업-학생 매칭

- 학교는 현장실습 기업에서 수행할 직무 내용과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기업-학생을 매칭해야 함.
 - 기업 견학, 기업 현장 교사와의 면담, 직장 적응(체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기업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함.
 - 기업-학생 매칭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함.
 -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함.
- 학교는 기업-학생 매칭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기업 기본 정보, 직무 내용, 현장실습 기간, 기업현장교사 배치, 수당, 복리후생 등의 실습 여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학생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 학교, 기업, 학생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에 등재함.
- 기업은 기업현장교사를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단독으로 근무하거나 안전보건상의 위험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운영해야 함.
-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기관 공조

Q & A

참여·선도기업의 등록

Q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참여 및 선도기업 신청 시 학교에서 등록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록 및 선도기업 신청 시 학교에서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해야 하는 서류는 ①, ②, ③입니다.

- ①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서식1**
- ②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서식3** (참여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 ③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4**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록 및 선도기업 신청시 학교 자체보관 서류는 ④, ⑤, ⑥입니다.

- ④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록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 ⑥ 기업의 4대보험 가입증명원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기준

Q 참여·선도기업 선정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른가요?

A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선도기업은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에서 선정하며, 기준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과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참여·선도기업 심의

Q 다른 학교 또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참여·선도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에 동일한 직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에 별도로 심의·선정 과정이 필요한가요?

A 참여기업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 등록한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도 우리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배치되는 직무, 학생의 전공 등 실습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 현장실사는 당해연도에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의 경우 타 시·도교육청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도 해당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협의체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선도기업은 시·도교육청의 심의, 사전 현장실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 A

선도기업 승인

Q 정부부처와 지자체 선정 우수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자동 승인되나요?

A 예외 없이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도기업 심의

Q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선도기업 신청을 했는데,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현장실습을 진행해도 되나요?

A 선도기업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참여기업으로서 현장실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받아야 합니다.

4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직무분석 실시 - 기업과 공동으로 실습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수행 내용 (또는 과업)을 분석하고, 이를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함. 나. 프로그램 개발 -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함. - 산업체에서 수행할 직무내용을 전문교과Ⅱ(기초과목, 실무과목)를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체화함. - 프로그램 개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발한 현장교육 훈련 표준모델 참고·활용 가능함. -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등 기업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를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 교사는 완성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서명함. 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심의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탑재함.	자료5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자료6 공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1주일 예시) 자료7 상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1개월 예시) 자료8 농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2개월 예시) 자료9 가사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3개월 예시)
관리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에 참여함	
기업 	- 학교와 공동으로 실습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수행내용 (또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와의 협의를 토대로 구성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는 완성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서명함.	

[세부 운영 내용]

가. 직무분석 실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현장실습 담당 교사와 기업 담당자가 공동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장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구체화함.

※ 직무기술서, 도면, 사진 등 제시



직무기술서 예시

주요 업무	책임 및 역할
원재료 입출고하기	원재료의 외관상 이상 유무 및 송장내용과 실물을 확인하고, 입고 수량을 계산한다.
	입고된 원재료를 로트(lot)별로 구분한다.
	원재료 정보를 이용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입고 기준에 따라 입고한다.
	원재료의 생산자, 품목, 제조일자, 입고일, 로트(lot)를 확인하여 선입선출한다.
	품질검사서를 참고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출고하고 재고수량을 기록(입력)하고 계산한다.
구 분	상 세 내 용
지식	검사기준서(검사방법의 종류와 적용범위)
	부적합 발생보고서
	생산 로트(lot) 개념
기술	원단상태 확인 능력
	원부자재 폭, 장, 밀도 등 외관 확인기술
	원재료 검사서 파악 능력
태도	검사 기준을 준수하려는 태도
	깨끗한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

나. 프로그램 개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실습 분야에 해당하는 전공 교과 교사와 기업 담당자가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자료5, 자료6, 자료7, 자료8, 자료9에 제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추가하여 실습기간 중에 학습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성화고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참고(<https://pdms.ncs.go.kr>)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특성화고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 현장실습 기업은 기업의 여건 및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배치할 부서를 선정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직무기술서, 도면 등의 형태로 구체화해야 함.
※ 직무기술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참고(<https://www.ncs.go.kr>)
- 학교와 기업은 현장실습 목표, 직무기술서 등을 토대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함.
 - 전문교과Ⅱ(기초과목, 실무과목)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내용을 개발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참고(<https://www.ncs.go.kr>)
 - NCS 직무분야는 직무기술서상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와 가장 유사한 NCS 세분류를 선정함.
 - 현장실습 목표는 선정된 NCS 직무분야의 세분류 개요를 참고하거나, 학교와 기업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서술함.
 - 실습내용은 직무분석 내용을 토대로 직무내용과 유사한 NCS 능력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습내용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기업의 특화된 직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개발함.
 - 실습유형은 크게 ① 입문교육, ② 실무교육(OJ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생에게 각 교육내용 별로 적절한 교육방법과 시간을 설정함.
 - 입문교육은 기업에 대한 기본정보 및 직무 소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등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적응지도 과정임.
 - 입문교육은 실습업체 업무소개, 기업특화교육 등을 전체 실습시간 중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산업안전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교육 등을 전체 실습시간 중 12시간 이상 필수로 입문교육에 배정되어야 함.
 - 실무교육(OJT)은 70% 이내로 편성하며,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으로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과정임.
 - 실습기간은 학교, 기업, 학생이 협의하여 학생의 성취수준, 기업의 준비 정도,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대 3개월(60일)까지 가능함.
※ 단,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도 가능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권장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하루 1시간 연장근무 가능함.

자료 5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유형	교육 내용				
입문 교육	• 기초적인 조직 이해 및 업무 이해에 대한 내용, 조직의 문화 및 조직 적응에 대한 내용 등 •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은 주로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테마를 기본으로 구성 가능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회사 개관	경영 환경	관련 제도	업무 이해	업무 기본
	- 비전 - 중심 가치 - 연혁 - 조직도	- 매출 - 업계 이해 - 업계 위치 - 전망	-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시스템 - 각종 규정	- 부서별 업무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 이해	- 보안 등 규정 - 기안 등 문서 작성
	• 지식 위주의 내용으로 직무 및 조직 적응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된 내용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등)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 유도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장 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실무 교육 (OJT)	조직 적응력 교육		-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 - 주요 사업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		
	직무 기본 역량 교육		-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 기본 역량 배양 - 문서 작성 등 직무 공통 역량도 함께 배양 필요		
	•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기술 습득) 등 • OJT(직무현장교육)는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임. • 기업현장교사의 시범과 직무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습생들이 실질적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기업현장교사의 멘토링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능력과 업무 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 2회 수행 권고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취급자)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 학습자료: 개인정보 종합포털 > 자료 > 교육자료 <https://www.privacy.go.kr/>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및 제29조 ② 매 분기마다 실시(연 4회) ③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⑥ 교육의무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학습자료: 안전보건공단 2019-교육홍보-164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학습자료: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이미 교육을 실시했어도 신입사원, 휴가자, 휴직자 복직 등 교육 재 실시
----	---

↓ 학습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 자료실 > 교육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정책자료실

주요정책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영상	등록일	2022-08-31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이도경
전화번호	044-202-7975		

원문보 링크 <https://youtu.be/Vhegg256E>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영상]
 10.69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
 10.01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어떻게 되어 있나?
 09.09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08.33 사용자 의무 이행 방법(해고, 대응방법)
 02.2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신고 방법, 신고 방법)
 04.19 각종 지원 제도 소개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영상

[직장 내 괴롭힘 교육영상] 고용노동부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구독자 10만명

375 100%

다. 기업현장교사의 배치 및 역할

- 전공지식·기술을 현장에서 경험·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 내의 현장전문가를 아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며 운영은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기업현장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음.(아래 자격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훈련지도 유경험자
 -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무실(작업장) 내에서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하며, 특히 기계·전기·화공·건설 분야 등 위험요소가 많은 직무인 경우에는 절대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 1명당 기업현장교사 1명 지정(1:1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업현장교사 1명이 현장실습생 여러 명을 지도할 수 있음.

- 특히 기계·전기·화공·건설 분야 등 위험요소가 많은 작업(끼임, 추락, 절단, 감전, 중량물 부딪힘 등)인 경우에는 필히 기업현장교사를 1:1로 배치해야 함.
 -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무실(작업장) 내에서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 하며, 현장실습생에게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의 산재예방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배치된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다른 직원을 대체하여 배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1인 기업 등 직원 수가 적어 배치된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현장실습생을 전담할 수 없는 기업은 현장실습 불가
- ※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산정 시 동시 지도 최대 2명까지만 인정

라.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학교(학과) 전공 적합성, 입문교육 및 실무교육 내용, 기업현장교사의 배치 등 적절성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자료 6 공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주일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00시 00구 0000로 1234		
	실습장	□□시 □□구 □□□□로 1350		
기업현장교사		김OO, 박OO		
현장실습 참여 학생		최○○(○○○학과), 정○○(○○○학과)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20○○년 0월 0일 ~ 20○○년 0월 0일 (5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0일 / 20○○년 0월 0일 ~ 20○○년 0월 0일 (지필고사)		
NCS 직무분야		정보통신(20)		
실습과제		무선통신망 구축		
평가횟수		1 회	평가항목	과제 수행
현장실습 시간 편성		총 시간	입문교육	실무교육
		35	14	21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 1 : 1 전담	□ 비전담 1 : 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공업고등학교	010-000-0000	김OO	
기업 담당자	OO기업	010-000-0000	박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만 지급될 수 있으며 단, 과년도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 용
실습생의 사전준비 상황	• 학교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세 가지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생은 이 중 무선통신 코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들로 학습동기가 높은 편임. •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유선통신, 위성통신 관련된 기초 교과목을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일부는 전자업체에서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음.
주요 실습요구	• 단순 통신망 구축 보조 업무뿐만 아니라 망 설치, 유지·보수, 장애 방지 대책과 관련된 기초 업무에 대한 실습을 희망함. •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휴대폰 기지국 관리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실습교육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
현장실습 목표	• 무선통신망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및 장비를 관리 운영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NCS / 기업특화	
	NCS 세분류 / 기업특화	능력단위 / 필요지식 및 능력
• 오리엔테이션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학생인권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21v3)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입문 교육	실무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 교사	현장 실습생	장소		
1일~2일차 (14)	입문교육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견학 / 강의	김OO 박OO	최OO 정OO	회의실	12	0
	입문교육	기업 소개 및 회사 업무 개요, 현장실습 안내	견학 / 강의	김OO 박OO	최OO 정OO	회의실	2	0
3일~4일차 (14)	현장실무 (NCS)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21v3)	실습	김OO 박OO	최OO 정OO	생산 라인	0	14
5일차 (7)	현장실무 (NCS)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21v3)	실습	김OO 박OO	최OO 정OO	생산 라인	0	5
	평가	과제수행 평가	서술	김OO 박OO	최OO 정OO	회의실	0	2
소 계							14	21
총 현장실습 시간		35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반드시 입문교육 시간 안에 편성하여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은 입문시간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자료 7 상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개월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000번길		
	실습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000번길		
기업현장교사		김OO, 박OO, 이OO		
현장실습 참여 학생		최○○(○○○학과), 정○○(○○○학과)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20○○년 0월 0일 ~ 20○○년 0월 0일 (2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2일 / 20○○년 0월 0일 ~ 20○○년 0월 0일 (지필고사)		
NCS 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02)		
실습과제		• 문서 작성 • 고객 관리 • 결산 처리		
평가횟수		중간 및 최종평가 1회	평가항목	과제 수행
현장실습 시간 편성	총 시간	입문교육	실무교육	
	140	52	88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 1 : 1 전담	☐ 비전담 1 : 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상업고등학교	010-000-0000	김OO	
기업 담당자	OO기업	010-000-0000	김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만 지급될 수 있으며 단, 과년도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 용
실습생의 사전준비 상황	본교는 상업계열 고등학교로 교육과정에 기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위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사무행정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주요 실습요구	- 학교에서 학습한 회계과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희망함. - 전공 실습 전 업체 및 업무에 대한 개요, 실습 일정, 보건/안전관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함. - 각종 사무용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업무 지원, 부서 일정 관리, 경비 처리 등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처리를 실제 업무 내용으로 실습을 희망함.
현장실습 목표	-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전표 작성 및 이에 따른 증빙 서류를 처리 및 관리할 수 있음. - 조직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의 구매, 유지 및 처분을 처리할 수 있음. - 내·외부 업무 협력 요청 사항을 접수하고, 내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NCS / 기업특화	
	NCS 세분류 / 기업특화	능력단위 / 필요지식 및 능력
- 오리엔테이션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학생인권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무행정	문서작성(0202030201_17v2)
	창구사무	고객관리(0204030406_15v1)
	회계	- 전표관리(0203020101_17v3) - 비품관리(0202010104_19v2) - 결산처리(0203020104_17v3)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입문 교육	실무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 교사	현장 실습생	장소		
1주차 (35)	입문교육 (의무교육)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 일정 안내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무기본역량교육	견학 / 강의	김OO 박OO	최OO 정OO 강OO	회의실	14	0
	현장실무 (NCS)	- 문서작성 (0202030201_17v2) - 고객관리 (0204030406_15v1)	견학 / 강의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회의실	0	21
	현장실무 (NCS)	- 전표관리 (0203020101_17v3)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사무실	10	25
3주차 (35)	현장실무 (NCS)	- 비품관리 (0202010104_13v1)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사무실	15	20
	현장실무 (기업특화)	- 결산처리 (0203020104_17v3)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사무실	13	18
4주차 (35)	평가	- 과제수행 평가	체크 리스트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회의실	0	4
소 계							52	88
총 현장실습 시간		140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반드시 입문교육 시간 안에 편성하여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은 입문시간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자료 8 농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2개월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경기도 화성시 OO로		
	실습장	경기도 화성시 OO로		
기업현장교사		김OO, 박OO, 이OO		
현장실습 참여 학생		최○○(○○○학과), 정○○(○○○학과), 강○○(○○○학과)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20○○년 0월 0일 ~ 20○○년 0월 0일 (4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없음		
NCS 직무분야		농림어업(24)		
실습과제		- 채소 재배 - 스마트팜 설비 설치 및 운영		
평가횟수		1회	평가항목	과제 수행
현장실습 시간 편성		총 시간	입문교육	실무교육
		280	84	196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 1 : 1 전담	□ 비전담 1 : 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고등학교	010-000-0000	장OO	
기업 담당자	OO기업	010-000-0000	김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만 지급될 수 있으며 단, 과년도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 용
실습생의 사전준비 상황	- 교육과정을 통해 농업 경영에 관한 일반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수행하였으며, 농업 창업 및 농업회사 법인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 임채소(쌈채소, 샐러드채소)의 생육과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사전 학습 실시함.
주요 실습요구	- 스마트팜의 자동화시스템 구조와 재배되는 작물의 생육 발달 과정과 유통 과정을 이해함. - 수경재배에 의한 온실 환경 제어에 대한 기초 업무 수행 기술을 습득함. - 기업 현장에서 특화된 채소 수경 재배 관리 방법 및 재배 시설 관리 방법을 학습함.
현장실습 목표	스마트팜의 기본인 식물 생육 조건(영양생리, 환경)과 자동화시스템 XX를 습득함.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NCS / 기업특화	
	NCS 세분류 / 기업특화	능력단위 / 필요지식 및 능력
• 오리엔테이션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 일정 안내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무기본역량교육	채소재배	• 채소 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 채소 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16v3) • 채소 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시설원에	• 시설원에 시설설치(2401010803_17v1) • 시설원에 시설관리(2401010804_17v1) •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입문 교육	실무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 교사	현장 실습생	장소		
1주차 (35)	입문교육 (의무교육)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실습일정 안내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의/ 견학	김OO 이OO	최OO 정OO 강OO	회의실	14	0
	실무교육 (NCS)	- 채소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 채소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16v3)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0	21
2주차 (35)	실무교육 (NCS)	- 채소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8	27
3주차 (35)	실무교육 (NCS)	- 채소수경재배관리(2401010319_16v3)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14	21
4주차 (35)	실무교육 (NCS)	- 채소 경영관리(2401010322_16v3)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14	21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입문 교육	실무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 교사	현장 실습생	장소		
5주차 (35)	실무교육 (NCS)	- 시설원에 시설설치(2401010803_17v1) - 시설원에 시설관리(2401010804_17v1)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7	28
6주차 (35)	실무교육 (NCS)	-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 시설원에 생리장해관리(2401010808_17v1)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10	25
7주차 (35)	실무교육 (NCS)	-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 시설원에 병해충관리(2401010807_17v1)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10	25
8주차 (35)	실무교육 (기업특화)	-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및 스마트팜 운용실	7	24
	평가	- 과제수행 평가	체크 리스트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재배온실	0	4
	소 계						84	196
	총 현장실습 시간						280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반드시 입문교육 시간 안에 편성하여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은 입문시간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자료 9 가사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3개월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경기도 화성시 OO로		
	실습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로		
기업현장교사		김OO, 박OO, 이OO		
현장실습 참여 학생		최○○(○○○학과), 정○○(○○○학과), 강○○(○○○학과)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20○○년 0월 0일 ~ 20○○년 0월 0일 (6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2일 / 20○○년 0월 0일 ~ 20○○년 0월 0일(지필고사)		
NCS 직무분야		식품가공(21)		
실습과제		- 과자류제품 생산 작업 준비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 빵류제품 생산 작업 준비 - 빵류제품 반죽정형 - 빵류제품 반죽발효 - 빵류제품 반죽익힘	
평가횟수		2회	평가항목	과제 수행
현장실습 시간 편성		총 시간	입문교육	실무교육
		420	130	290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 1 : 1 전담 ☐ 비전담 1 : 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고등학교	010-000-0000	장OO	
기업 담당자	OO베이커리	010-000-0000	김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만 지급될 수 있으며 단, 과년도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 용
실습생의 사전준비 상황	현장실습생은 식품가공 과목과 제과·제빵 관련 기초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제과·제빵분야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주요 실습요구	- 학교에서 학습한 제과·제빵 제품 생산 작업 준비 과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바탕으로 과자류 및 빵류 제조와 관련된 기초 업무에 대한 실습을 희망함. - 학교에서 배운 NCS 능력단위별 과정과 이와 관련된 기업체의 특화된 제과·제빵 생산 교육을 희망함.
현장실습 목표	- 실습기업의 특징 이해와 기업의 조직원으로서 필요한 능력 함양 - 학교에서 배운 제과·제빵 기술을 바탕으로 과자 및 빵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습득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NCS / 기업특화	
	NCS 세분류 / 기업특화	능력단위 / 필요지식 및 능력
* 오리엔테이션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 일정 안내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조직적응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무기본역량교육	제과	-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112_18v2)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2102010102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2102010103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2102010104_18v4) - 과자류제품 포장(2102010105_18v3)
	제빵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213_18v2) - 빵류제품 반죽발효(2102010203_18v4) - 빵류제품 반죽정형(2102010204_18v4) - 빵류제품 반죽익힘(2102010205_18v3) -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입문 교육	실무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 교사	현장 실습생	장소		
1주차 (35)	입문교육 (의무교육)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 일정 안내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무 기본 역량 교육	강의/ 견학	김OO	최OO 정OO 강OO	회의실	14	0
	실무교육 (NCS)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2102010213_18v2)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작업실	0	21
2주차 (35)	실무교육 (NCS)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2102010213_18v2) - 빵류제품 반죽발효 (2102010203_18v4)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작업실	15	20
	실무교육 (NCS)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2102010213_18v2) - 빵류제품 반죽정형 (2102010204_18v4)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작업실	15	20
4주차 (35)	실무교육 (NCS)	- 빵류제품 반죽익힘 (2102010205_18v3) -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작업실	10	25
	실무교육 (NCS)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2102010213_18v2) - 빵류제품 반죽발효 (2102010203_18v4) - 빵류제품 반죽익힘 (2102010205_18v3) - 빵류제품 반죽정형 (2102010204_18v4) -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작업실	9	26
6주차 (35)	실무교육 (NCS)	-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 (2102010112_18v2)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2102010102_18v4)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작업실	5	30
	실무교육 (NCS)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2102010103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2102010104_18v4) - 과자류제품 포장 (2102010105_18v3)	이론/ 실습	김OO 박OO 이OO	최OO 정OO 강OO	작업실	10	25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입문 교육	실무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 교사	현장 실습생	장소		
8주차 (35)	실무교육 (NCS)	-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 (2102010112_18v2)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2102010102_18v4)	이론/ 실습	김OO	최OO	작업실	7	28
				박OO	정OO			
				이OO	강OO			
9주차 (35)	실무교육 (NCS)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2102010103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2102010104_18v4) - 과자류제품 포장 (2102010105_18v3)	이론/ 실습	김OO	최OO	작업실	18	17
				박OO	정OO			
				이OO	강OO			
10주차 (35)	실무교육 (NCS)	-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 (2102010112_18v2)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2102010102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2102010103_18v4)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2102010104_18v4) - 과자류제품 포장 (2102010105_18v3)	이론/ 실습	김OO	최OO	작업실	10	25
				박OO	정OO			
				이OO	강OO			
11주차 (35)	실무교육 (기업 특화)	- 특화 메뉴 교육	이론/ 실습	김OO	최OO	작업실	10	25
				박OO	정OO			
				이OO	강OO			
12주차 (35)	실무교육 (기업 특화)	- 특화 메뉴 교육	이론/ 실습	김OO	최OO	작업실	5	23
				박OO	정OO			
				이OO	강OO			
	평가	- 과제수행 평가	체크 리스트	김OO	최OO	회의실 작업실	2	5
				박OO	정OO			
				이OO	강OO			
소 계							130	290
총 현장실습 시간		420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은 반드시 입문교육 시간 안에 편성하여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은 입문시간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Q & A

프로그램 개발

Q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기간은 최대 3개월(60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60일) 이상 가능합니다.

직무 분석

Q 현장실습 직무분석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현장실습 직무분석을 위하여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인증 시스템' 홈페이지(<https://pdms.ncs.go.kr>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2019년 특성화고 현장훈련 표준모델 개발 알림/2018년 특성화고 현장훈련 표준모델 개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개발

Q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는 반드시 NCS 능력단위가 편성되어야 하나요?

A NCS 능력단위가 아니더라도 전공적합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특화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익명 처리

Q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업로드할 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익명 처리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O호'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습 장소 변경 신청

Q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현장실습 장소가 다를 경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등록 시 기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는 실제 실습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현장실습 장소가 다른 이유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합리할 경우 복교 등 학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사전교육 실시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사전교육 실시 ◦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학생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 (12차시)」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함. ◦ 현장실습에 나가는 것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직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나. 교사 연수 참여 ◦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에 대한 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이수함(15차시 이상). 다. 현장실습 전 교육 자료 준비 ◦ 현장실습 기간 중 활용 가능한 산업안전 매뉴얼,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자료 등을 학생에게 지급함.	자료10 안전보건교육 관련 정보 자료11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온라인 연수
관리자 	◦ 사전교육을 승인 및 운영 관리함.	
기업 	◦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등을 반드시 입문 교육으로 편성하여 운영함.	
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직전 특별교육을 실시함.	

[세부 운영 내용]

가. 사전교육실시

-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업윤리(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 그 외 '성공적인 직업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권익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사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 학생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12차시)」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수료 인정
- 곧 현장실습에 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직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 실습직전 특별교육 유형은 총 3개이며, 학생은 그 중 한 과정 이상 필수로 수강해야 함.
 - 실습직전 특별교육 종류
 - 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정보센터-미디어센터-동영상-주요동영상-현장실습 직전 특별교육 1~3
 - ② 학교전담노무사 방문 특별교육
 -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나. 교사 연수 참여

-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사는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에 대한 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에 적극 참여해야 함. **자료10**, **자료11**
※ [중앙교육연수원]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과 재해예방'(15차시, 원격연수), '청소년 노동인권, 교사와 만나다'(15차시, 원격연수) / [충남대학교] '직업계고 교원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역량강화' 연수(34차시, 집합연수) 등

다. 기업의 현장실습 입문 교육 운영

- 기업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현장실습생이 실무교육에 투입되기 전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직무 소개,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등의 입문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입문교육 운영 계획 명시
- 학교는 기업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입문교육을 충분히 편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의 경우 현장실습 시작일로부터 1주 내 기업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해야 함.

자료 10 안전보건교육 관련 정보

- **교육대상**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 **교육시기** : 담당교사와 교육 일정 의
- **교육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을 통한 신청

안전보건교육 포털 접속 후
[교육신청] - [교육과정 모두보기]

교육과정 선택 매뉴얼에서 [과정선택] - [교육신청]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특성화고)(대면)'
※ 교육신청을 위한 인증절차 수행 필요

자료 11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온라인 연수(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 학습자료: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나의강의실] - [수강신청]

Q & A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Q 현장실습 실시 전에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A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12차시)'과 '실습직전 특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직전 특별교육'은 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온라인 교육, ② 학교 전담노무사 방문교육,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한 과정 이상을 현장실습 시작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6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기업 대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수당 지급 안내 -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당을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현장실습 시작 후 실제 현장실습 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함. 2023학년도 현장실습 수당은 시간당 4,700원임. 나. 현장실습 협약 체결 - 현장실습 실시 전 학교와 기업, 현장실습생의 3자간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함. - 현장실습 협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서식을 활용함.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이내로 운영함.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실습 시간 연장 가능하며, 서면 확인 필수) -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함. 「현장실습표준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서 원본을 학교, 기업, 학생이 각각 보관함. 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작성 -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습기업에 대한 정보, 실습 내용, 수당 등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을 재(再)안내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를 받음. 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안내 - 기업에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유의할 것을 당부함.	서식5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서식6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관리자 	현장실습표준협약 승인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날인함.	
기업 	현장실습협약 체결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날인함.	서식5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노무사 (산업안전전문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 검토함.	

[세부 운영 내용]

가. 기업 담당자에게 현장실습 수당 지급 안내

- 학교는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함.
- 2023학년도 현장실습 수당은 시간당 최저 4,700원으로서, 기업은 현장실습 동안 현장실습생에게 시간당 4,7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 2023학년도 현장실습 수당으로 책정된 4,700원은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나머지 60%는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 ※ 구체적인 현장실습 수당 계산식은 [Q/A](#) 참조
- 현장실습이 시작되면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 수당을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하고,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현장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 ‘현장실습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 개인별로 신청

나. 현장실습 협약 체결

-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기업, 학생은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현장실습 협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고시 제2018-165호)」 서식을 활용함.
- 학교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
 - 현장실습 시간, 휴일 및 야간 근로의 금지,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적용과 「근로기준법」 준용 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함.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이내로 운영하되, 학교, 기업, 학생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함.
 - ※ 실습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상에 서면으로 처리(구두 합의 불인정)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하며, 현장실습 기업은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함. [자료12](#) 참조

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작성

-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습기업에 대한 정보, 실습내용, 수당 등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를 받음.
 -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 협약 사항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학생과 학부모의 날인이 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함. [서식6](#)

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안내

- 기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실습생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사항에 대한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기업에 필수로 알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6조, 제27조, 제9조 제1,3항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2. 3.]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에 대한 변경 사항('23.3.30. 본회의 의결)을 필수로 알림.
※ 동 조항이 '23.3.30.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됨(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3.10월 전면 적용)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추가 준용사항

1. 일부개정('23.3.30.) 사항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됨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2. 일부개정('23.3.30.) 사항 -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사)**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일부개정 사항 포함)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54조(휴게)	현장실습 4시간 마다 30분 이상 현장실습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	계속 실습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현장실습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함.	기존
	제65조(사용금지)	18세 미만자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에서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지 못함.	기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제72조(강내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자 강내 근로 금지	강내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며,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18세 미만자 현장실습을 금지함.	기존
	제73조(생리휴가)	여성 현장실습생 청구 시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여성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 1회 청구하는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함.	기존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현장실습생 자유의사에 반하는 실습 강요 금지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폭행, 협박, 감금 등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추가
	제8조(폭행의 금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써 현장실습생에 대한 폭행 금지	현장실습생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금지됨.	추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일부개정 사항 포함) 해설 〉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3자가 현장실습 계약 관계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 없는 현장실습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현장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 관계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추가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근로시간 중이라도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됨.	추가
	제36조(금품청산)	현장실습생의 실습종료 또는 사망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할 의무	사망 또는 현장실습 종료와 같은 현장실습 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현장실습 지원금 등)을 청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	추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현장실습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실습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됨	추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조사 및 기타 조치 의무와 괴롭힘 조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 확인 전, 후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추가 ※ 학교장 또는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흡사하거나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도제, 양성공, 수습 등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열악한 실습조건으로 사용하면서 흡사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가사 또는 잡무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	추가
벌칙	제107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발생시 위반자 제재	제7조, 제8조, 제9조 위반 시 적용(추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일부개정 사항 포함) 해설 〉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제109조제1항(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위반, 갯내근로 실시 및 금품청산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시 제재	제65조 및 제72조 위반 시 적용 (기존) 제36조, 제76조의 3제6항 위반시 적용(추가)
	제110조제1호(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공민권 행사 미보장 시 제재	제54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10조 위반 시 적용(추가)
	제114조제1호(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미보장 및 기능습득자 보호 위반시 제재	제73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77조 위반 시 적용(추가)
	제116조제1항(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일정 범위 내 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제76조의2 위반 시 적용(추가)
	제116조제2항(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괴롭힘 조사실시 의무(제2항), 괴롭힘 확인 시 조치 의무(제5항) 및 조사 관여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제7항) 위반 시 제재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 시 적용(추가)

(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기관대표(이하 “현장실습기관”이라 한다)와 OO공업고등학교 _____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OO공업고등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상호 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0000년 ____월 ____일부터 ~ 0000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이론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산업현장시설 내·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현장실습방법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현장실습기관”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현장실습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현장실습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5조제4호에 따른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사(또는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장실습협의체는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과 직접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매월 1회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현장실습기관의 의무)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현장실습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 드러난 개선 및 변경사항을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7.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제6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내용은 “현장실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출결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현장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제9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시간은 주 35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에 _7_시간(현장 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_일은 ____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 2에 따라 1일 7시간 이내,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일 1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해당사항에 ○표)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_분)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현장실습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현장실습 시간 중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현장실습 수당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기관”은 식비, 교통비, 복지비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수당을 다음과 같이 매월 __일에 지급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다 음 -

① 0000년 00월 00일부터 ~ 0000년 00월 00일까지 매월(일) 원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현장실습기관”의 사규 또는 사업장 관행을 준용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4조(복리후생)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6조(포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____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습중단 방지)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증명서) ① “현장실습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 후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생”이 이미 이수한 내용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0. 00.

(현장실습기관) 기 관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 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0000 고등학교

교 장 (인)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실습학생	_____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	----------------------------------

☐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실습 업체명		연락처	
소 재 지			
실습 기간	20__ . ____ . ____ ~ 20__ . ____ . ____ (총 ____ 시간)	연장실습 동의 여부 (1일 1시간 이내)	동의, 비동의
실습 내용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실습 기간 중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및 수당(현장실습 지원금 포함) 지급에 동의합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친권자(후견인)로서의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학생의 보호자(또는 학부모, 후견인, 법정대리인)로서 학생이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지원금 자격요건 미충족, 허위 작성, 오지급 등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제재부가금 등 포함)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__년 ____월 ____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Q & A

현장실습 실습기간 기준

Q 현장실습 기간 중 1일 실습시간 최소기준이 있나요?

A 학교 수업을 대체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므로, 학교 하루 수업시간인 7시간 실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생은 일 1시간의 연장실습(근무)만 가능하나 반드시 상호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연장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1일 7시간 미만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현장실습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학습을 하거나, 현장실습 종료 후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 수당 근거

Q 기업이 지급하는 최저 현장실습 수당 4,700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최저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의 40%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0%는 국고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현장실습 수당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9,620\text{원} \times 6\text{일} \times 7\text{시간} = 404,040\text{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1주일 수준)
- $404,040 \times 40\% = 161,616\text{원}$ (최저임금의 40%)
- $4,600\text{원} \times 5\text{일} \times 7\text{시간} = 161,000\text{원}$
- $4,700\text{원} \times 5\text{일} \times 7\text{시간} = 164,500\text{원}$

현장실습 수당 계산

Q 기업이 현장실습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4,700원×1일 실습시간×총 실습일'로 책정하며,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저 현장실습 수당 4,700원 책정 시 주휴수당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은 합의에 의해 일 1시간의 연장실습(근무)만 가능하므로 일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실습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실습생이 결근 또는 조퇴 시, 기업은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Q & A

현장실습 표준협약 외 근로계약

Q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현장실습 협약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있나요?

A 국가적 책임 하에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춘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사관의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동시 작성은 불가)

추가적으로 채용을 이유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사관 관련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시·도교육청 협의체의(선도기업 승인) 심의, 취업전환 시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 노무사의 협조 하에 실사가 가능합니다.

7 현장실습 운영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현장실습생 기업 도착 및 의무교육 실시 확인 - 현장실습 시작 당일 학생의 현장실습 기업 도착 여부, 의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실습 장소의 안전 확보 여부, 안전 장비 지급 등을 확인함. - 실무교육 투입 전 의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나.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일지(LMS)를 매일 검토해야 함. - 현장실습생 출결일지 서식7를 기업에 작성 요청함. - LMS 외 SNS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함.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대면)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1개월 미만의 현장실습 또한 1회 이상의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함. -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서식8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해야 함. - 매월 1일 기준으로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사항을 교육청에 전송해야 함. (8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며, 교육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 -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에 대한 출결일지를 받아 나이스 상에 출결처리 해야 함. - 참여기업의 경우 노무사에게 기업코칭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 현장실습의 변경 - 현장실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서식9를 받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기업에 통지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해야 함.	참고 5.사전교육 실시 /세부 운영 내용(p60) 참고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HIFIVE) 활용 매뉴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IFIVE)/현장실습자료실/ 61번 참조) 자료13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 서식7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서식8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서식9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예시) 서식10 현장실습 사안 보고서 서식11 현장실습 복교사유서(예시) 예시8 현장실습 복교 프로그램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라.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지원 - 현장실습 협약의 위배 또는 학생의 안전보건 및 권익을 침해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복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함. - 안전보건 및 권익침해 사안이 중한 경우 교육청을 통하여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조치함. 마. 안전사고 조치 - 기업 발굴 단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 있어야 함.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전사고 조치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해야 함. 바. 복고 프로그램 - 현장실습 조기 복고하는 학생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관리자 	- 순회지도 및 결과 보고를 최종 승인함. - 방문 순회지도에 대해 현장실습 운영비의 수당을 지급함. - 기업의 현장실습 변경합의서를 최종 승인함.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사안 발생 시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함.	참고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기업 	- 현장실습생의 도착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함. -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서식7 를 작성하여 매월 말에 학교에 제출해야함. - 실무 투입 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실시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함. - 현장실습에 필요한 안전 장비,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해야 함. - 현장실습생에게 시간당 최소 4,700원 이상의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학교의 순회지도, 노무사의 기업코칭(선도기업에 한함), 시·도 교육청의 지도·점검, 중앙단위의 지도·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순회지도 및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생의 치료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치하고, 학부모와 학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	참고 5.사전교육 실시 /세부 운영 내용(p60) 자료12 현장실습생 산재 보험 가입 및 수당회계 처리 방법 서식7 현장실습 (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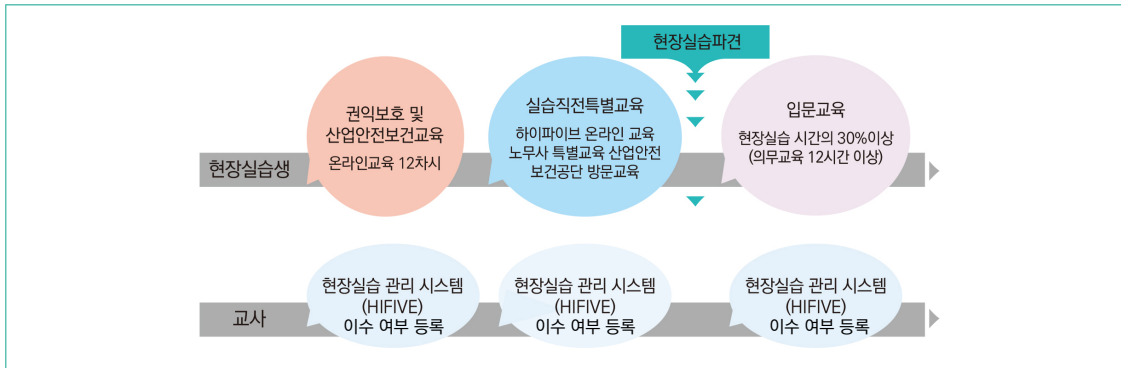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 참여·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업코칭을 시행한 후 결과 보고서(점검결과표)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지도 등 기업코칭을 기업당 1회 이상 실시함. - 기업코칭 실시 전 학교와 협의하여 실시함.	
학생 	◦ 현장실습 일지를 매일 작성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LMS에 작성 ◦ 부당대우 발생 시 학교 교사, 학교전담노무사, LMS,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상담 및 권익구제 요청을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 학부모,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림.	참고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HIFIVE) 활용 매뉴얼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HIFIVE) /현장실습자료실 /61번 참조) 자료14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2023년)

[세부 운영 내용]

가. 현장실습생 기업 도착 확인 및 입문교육 실시

- 1)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당일 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도착 여부, 의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현장실습생이 기업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함.
 - 전화, SNS 등을 통해 기업 관계자 및 현장실습생으로부터 실습 장소의 위험성 여부,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함.
 -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재확인함.
※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기업 발굴 단계에서 최초 확인해야 함.
 - 실무 투입 전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함.
※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을 입문교육으로 운영, 이 중 12시간 이상을 의무교육으로 운영해야 함.
- 2)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안전 장비,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해야 함.
- 3)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시간당 최소 4,700원 이상의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자료12**
- 4) 기업은 실무 투입 전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의무 교육 시행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함.
- 5) 기업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교육을 시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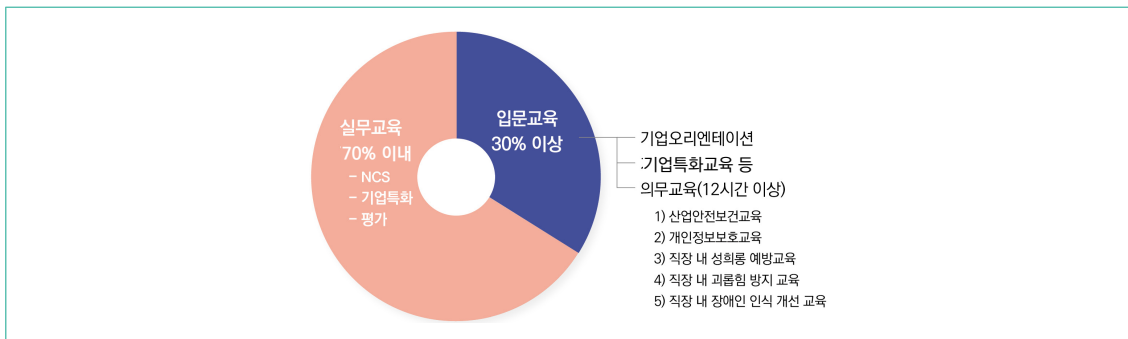
[현장실습생을 위한 필수 안전 교육]



- 입문교육(기업체에서 실시) 시간

입문교육시간	입문교육내용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최소 30% 이상을 입문교육 시간으로 확보해야 함.	• 실습업체 업무소개, 기업특화교육 • 의무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 12시간 이상

[현장실습생을 위한 필수 안전 교육]



Q & A

현장실습운영

Q

기업현장교사는 실습시간 동안 항상 현장실습생과 동행해야 하나요?

A

현장실습생과 항상 동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동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1인 기업의 현장실습은 불가합니다. 기업현장교사의 출장, 휴가, 외근 등 부재 시 기업 내 다른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동행해야 하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상시적 관찰과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체 지정된 기업현장교사의 수당은 현장실습 종료 후 정정을 통하여 실제 담당기간만큼 각각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방법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진행함.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방법]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보험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	사무대행기관번호		
사무대행기관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취득(고용)신고내역 **1 부과구분부호 설명**

연번	신청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일자리신청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실습생주민번호
	체류자격	성명
	대표자여부	국적
		실습생 성명

⚠ 주민번호 입력 후 **동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완료하셔야 근로자명 입력이 가능합니다.
 ⚠ 이미고용정보(취득)가 되어 있는 근로자는 신청구분에서 해당보험 체크를 해제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직종부호	
1주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년월	계약직여부	☐ 예 ☐ 아니요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사유	선택

산재보험			
해당내용 입력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직종부호	
1주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년월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사유	현장실습생

국민연금			
소득월액(원)	취득일	취득월 납부여부	선택
취득부호	선택	특수직종	선택
지역연금 부호	선택		

건강보험			
보수월액(원)	취득일	취득부호	선택
보험료감면부호	선택	피부양자신청	☐ 예 ☐ 아니요
공무원/교직원	회계부호	직종부호	선택

초기화 대상자추가

□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생 수당 회계처리

-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시,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신고할 수 있음.
- 교육훈련비 지급 시, ①현장실습표준협약서 ②이체내역서(기업에서 학생 계좌로 실습수당을 이체한 내역) 등 2가지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과 현장실습 진행을 위해 소요된 경비를 교육훈련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회계처리 절차
 -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함(20%는 국세, 2%는 지방세).
 -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60%를 적용함.
 - 예를 들어, 현장실습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기타소득은 100만 원, 필요경비는 60만 원(100만 원의 60%),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 (=100만 원-60만 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88,000원(40만 원의 22%)임.
 - 즉, 현장실습기업에서 실습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1) 88,000원을 원천 징수하고, (2) 나머지 잔액 912,000원을 실습생에게 지급하고, (3) 원천징수세액 88,000원 중 8만원은 세무서(국세)에, 8천 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 납부함.
 - 기타소득이 연간 750만 원(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습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지니게 됨.

기타소득 (실습생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100만 원	실습시간*실습수당
필요경비	60만 원	100만 원*60%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기타소득)-(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	88,000원	(기타소득금액)*22%
실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금액	912,000원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현장실습 수당의 교육훈련비 계정 처리 방법

- 현장실습기업이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함.
-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은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지급한 수당 등의 30%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실습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연간 5,000만 원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1,5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현장실습기업 입장에서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수당의 30%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5%).
- 현장실습 기업 내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

구분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교육훈련비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1,000,000
(대변)	보통예금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1,000,000

- 현장실습기업이 매년 3월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연구·인력비 지출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고,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외부조정)을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 이러한 연구·인력비 지출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반영 요청함.
(증빙자료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실습수당 이체내역서)

나.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

- 학교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일지 작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서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일지를 매일 검토 해야 함.
 - ※ 부득이하게 당일 실습일지를 검토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함.
 - ※ 현장실습생이 LMS를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즉각적인 답변과 조치를 해야 함.
- 학교는 매일의 LMS 검토 외에도 현장실습 담당 교사,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의 주관하에 SNS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함.
 - ※ 예: SNS 활용 아침 안부 인사,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활용한 출석 체크 등
- 학교는 기업이 현장실습 프로그램대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함.
- 학교는 기업에서 작성한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서식7**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생의 출결을 처리함.
 - ※ 현장실습(취업) 학생 NEIS 출결입력 방법 **자료13**
-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사고 및 부당대우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현장실습 전, 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안내해야 함.
 - ※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2023년) **자료14**

Q & A

출결처리

Q

겨울방학 또는 이듬해 1월 1일 이후 현장실습 없이 근로계약 체결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현장실습과 동일하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일일출결 처리

-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일자 조회 후 현장실습 클릭, 현장실습 기간 입력 후 저장(1학기 종료일자는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에서 1학기 종료일자, 2학기 종료일자는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에서 졸업일을 종료일자로 입력)-저장-일일 출결때마다 현장실습 적용 클릭 → 인정결석 처리됨.

일일출결관리(담임용) - 2022.05.20

번호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비고
1	김	2022.07.01	2022.08.10	
2				
3				
4				
5				

일일출결관리 현장실습 출결기간입력

※ 3학년 패선디자인과 3반 2022.07.01

번호	성명	조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출결	마감
1	김	/	/	/	/	/	/	/	/	△	
2											
3											
4											
5											
6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 신고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유해위험업무, 표준협약 미체결, 실습 시간초과, 야간·휴일실습,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순번	시도교육청	대표번호
1	서울	1544-7695
2	부산	051-866-7420
3	대구	053-231-8152
4	인천	032-550-1729
5	광주	062-570-2970
6	대전	042-616-8369
7	울산	052-220-1965
8	세종	044-320-2244
9	경기	031-218-4093
10	강원	033-258-5623
11	충북	043-290-2694
12	충남	041-640-7530
13	전북	063-239-3429
14	전남	1522-1751
15	경북	054-805-3434
16	경남	055-210-5149
17	제주	064-710-0377



중앙취업지원센터 (1599-8297, centralwork@kosaf.go.kr)



학생 조치 사항

- 1) 현장실습생은 당일 실습한 내용을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의 LMS에 접속하여 작성함.
- 2)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고충이 있으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음.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의 LMS의 '상담 신청'에 고충 작성
참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현장실습자료실/61번 참조
-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학교 교사에게 고충 상담
- 학교전담노무사 개인 휴대전화로 고충 상담
 ※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학교전담노무사 개인 연락처를 사전에 알림.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
 ※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자료14**

- 3) 현장실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생은 본인의 치료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 학부모,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림.

1) 순회지도(학교)

-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실습상황, 건강,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순회 지도를 실시해야 함.
 ※ 순회지도는 학교 관리자, 교사, 취업지원관 등 현장실습 관계자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음.
- 순회지도의 주 대상은 '학생'이며, 순회지도 시 학생 면담뿐만 아니라 기업현장교사, 기업 대표 등 기업 관계자 면담을 필수로 포함하여 실습상황 전반에 관해 확인해야 함.
 ※ 전화,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순회지도(모니터링) 시에는 수당지급 불가
- 교사는 기업별로 순회지도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반드시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함.
- 순회지도를 실시한 담당자(교사, 취업지원관)는 순회지도 완료 후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서식8** 작성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해야 함.
- 학교는 순회지도에 대하여 현장실습 운영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순회지도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으로 여비와 중복지급 가능하며, 순회지도비 지급기준은 1개 기업당 관내·외 3만원으로 1일 최대 2개 기업까지 지급 할 수 있음. 단, 1개 기업에 여러 명이 순회지도를 나간 경우 2명 분에 해당하는 순회지도비(6만원)만 지원가능함. (예시/ A기업에 홍○○, 이○○ 교사, 김○○ 취업지원관 3명이 순회지도를 나간 경우에 6만원만 지원 가능하며 이를 안분하여 각각 지급)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1. 기본 사항

학 생	과 3학년 반 번 성명:
기업명 (교육기관)	
실습(근무)기간	20○○.00.00 ~ 20○○.00.00. (일)
실습(근무)시간	매일 00:00~00:00

2. 출근 상황

근태상황(일자 및 결과) - 해당횟수 기재(00회/총 일수)							
출근	18 20	결근	2 20	지각	1 20	조퇴	1 20

예시)

10/11(결석), 1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기업담당자 확인	(인)
----------	-----

※ 근태상황은 매월 초에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팩 스 : - 전 화 :

※ 근태상황은 학교 출결상황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상황 중 병으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귀하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1. 기본 사항

기업명 (교육기관)	담당자 확인	(인)
---------------	--------	-----

2. 출근 상황

연번	학 과	반	번호	성명	근태상황(일자 및 결과)	
예시	OOO과	1	10	홍길동	실습(근무)기간	실습(근무)시간
					20 .00.00 ~ 20 .00.00. (일)	매일 09:00 ~ 16:00,
					출결 특이 사항	10/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1	OOO과	1	10	홍길동	실습(근무)기간	실습(근무)시간
					20 .00.00 ~ 20 .00.00. (일)	매일 09:00 ~ 16:00,
					출결 특이 사항	10/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2	OOO과	1	10	홍길동	실습(근무)기간	실습(근무)시간
					20 .00.00 ~ 20 .00.00. (일)	매일 09:00 ~ 16:00,
					출결 특이 사항	10/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 근태상황은 매일 초에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팩 스 : - 전 화 :

※ 근태상황은 학교 출결상황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상황 중 병으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귀하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결 재	담 당	부 장	교 감
산업체명		지도일시	20 . . . (: ~ :)		
주 소		전화번호			
현 장 실 습 생	과 번, 성명 과 번, 성명				
영 역	지도내용			예	아니오
현장 실습 협약	1.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가?				
	가. 현장실습 기간 준수				
	나. 현장실습 입문교육 실시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 실시, 의무 교육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준수				
	라. 기업현장교사 배치				
	마. 현장실습 수당 지급				
	바.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준수				
현장 실습생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4.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5. 현장실습생의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6.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현장 실습 운영	1. 현장실습이 본래의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산업체 고용주가 현장실습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4.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과 동일사업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6. 현장실습 환경 및 여건은 안전보건 상 양호한가?				

현장실습 실태	* 현장 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1. 현장실습 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2.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무 () 3. 위반사항: ① 없음 () ② 시간초과 () ③ 야간실습 () ④ 휴일실습 () ⑤ 유해위험업무 () ⑥ 생리휴가 미 실시 () ⑦ 성희롱 등 () ⑧ 폭행·폭언 등 () - 조치: 시정권고 () 근로감독 요청 () 과태료 부과 요청 () 복교 () - 결과: 시정완료 () 근로감독 실시 () 과태료 부과 () 복교 ()					
	■ 학생 및 기업체 면담 내용					
산업체 면담내용						
학생 면담내용 및 전달사항						
종합의견 (애로사항)						
학생 만족도	참여 학생의 기업 만족도	매우 만족 5	만족 4	보통 3	불만족 2	매우 불만족 1
구 분	소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서명	
보고자						
동행자						
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①						

2) 기업코칭(노무사)

- 노무사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보호 조치 실행 등 코칭을 시행함.
- 학교는 기업코칭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기업에 안내하고, 노무사는 기업과 기업코칭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선도기업은 반드시 현장실습 운영 직무 별로 기업코칭을 실시해야함.
※ A기업이 ①기계, ②사무와 같이 두 개 직무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직무별로 기업코칭을 실시하고 각 개별 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회에서 수당 지급
- 참여기업도 학교전담노무사와 협의하여 기업코칭 실시 가능(공인노무사회에서 수당 지급)
- 한 기업에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동일 직무로 실습 중인 경우 기업 코칭 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해당 학생 최대 5명까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음(공인노무사회에서 수당 지급)
- 기업코칭은 노무사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사, 취업지원관 등 동행 가능
- 노무사로부터 기업 코칭 시 학생 면담이 진행된 기업은 학교의 순회지도를 1회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음.
※ 단, 학교의 전화, SN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은 상시 실시
- 노무사는 기업코칭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함.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노무사를 추가 활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음.
※ 한국공인 노무사회 지원 사항 이외의 추가 활용 시 수당



기업 코칭 노무사 배정 절차

- 1) (학교⇒기업) 점검 일정 통보 및 안내
- 2) (학교⇒학교전담노무사) 기업 코칭 수행 가능 여부 문의
- 3) (학교전담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 학교전담노무사의 일정 수행 불가 시
수도권 지역 학교-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노무사 배정 요청
수도권 외 지역 학교- 대표노무사에게 노무사 배정 요청
- 4)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대표노무사⇒배정된 노무사) 가능한 노무사를 매칭하여 안내
- 5) (노무사⇔기업) 기업 코칭 수행

Q & A

수당지급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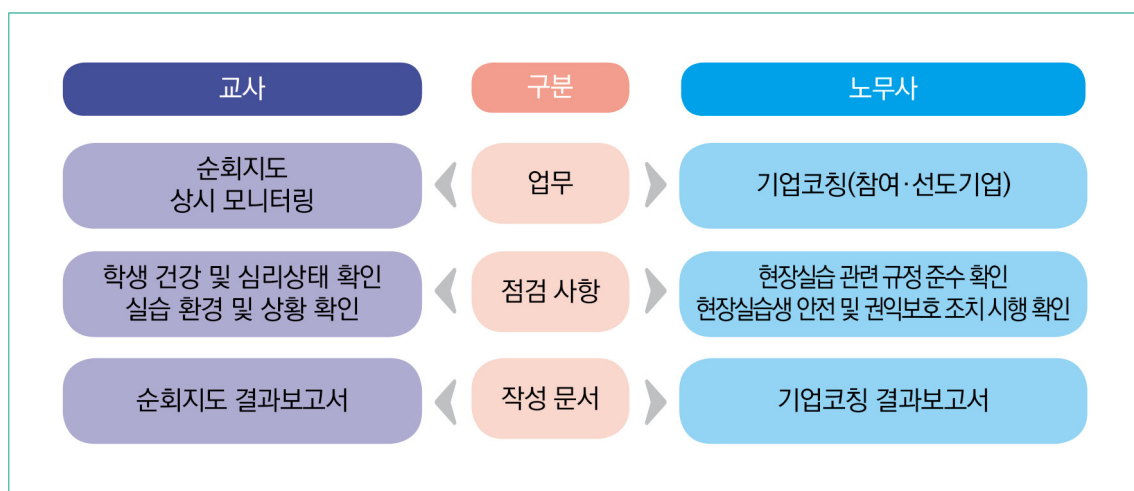
학교전담노무사와 동행하여 기업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학교에서 노무사에게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사전 현장실사, 실습 직전 특별교육, 기업 코칭(선도·참여기업),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 공인노무사 추가 활동에 대한 수당은 학교에서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여 수당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로 지급, 현장실습 운영소위원회 서면의견 대체 시 수당 미지급) 그 경우 수당은 교육부 및 한국 공인 노무사회 에서 사전에 설정한 금액에 따라 책정합니다. 피해 학생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적인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상시 가능하나, 피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하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교사와 노무사의 역할 구분



3)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고용노동지청)

- 학교나 교육청은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산업안전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대우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 감독 또는 근로감독을 요청함.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 학교나 교육청은 산업안전 사고 및 부당대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 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컨설팅)를 요청하고, 개선이 미흡할 경우 산업안전 감독 또는 근로감독을 요청함.

- 산업안전 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 및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컨설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개선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함.

* 취약 사업장: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4) 지도·점검(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학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학생 지원 및 관리 등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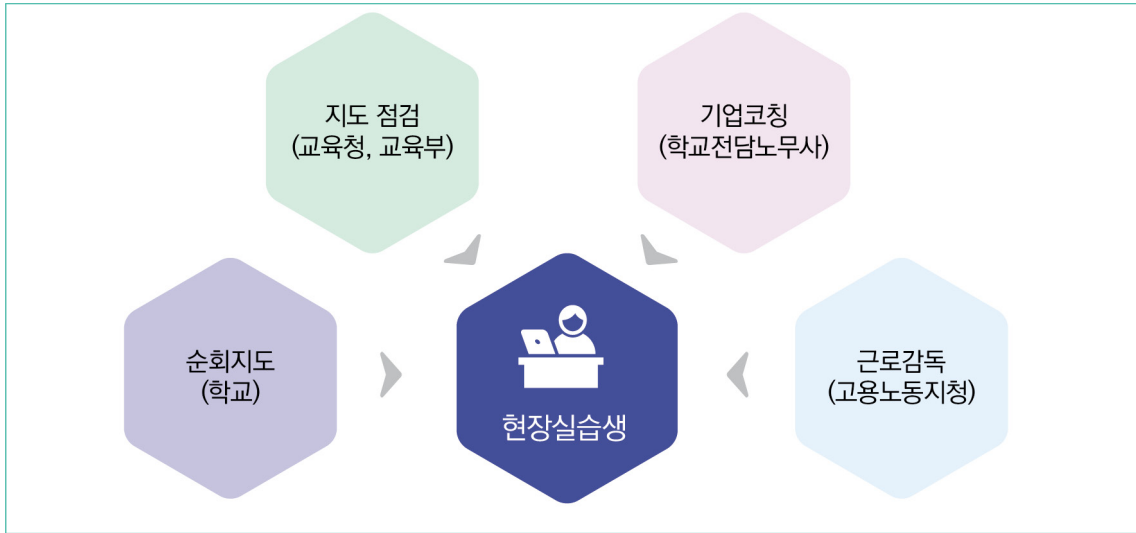
※ 근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5조(지도·점검 등)

- 교육청 단위 지도·점검은 관할 직업계고 및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지회, 노무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름.
- 중앙단위 지도·점검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구분	대 상	주관	시기
중앙단위 지도·점검	17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1~12월
시·도단위 지도·점검	직업계고등학교(수시 점검)	시·도교육청	연중
현장실습 기업 지도·점검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고위험 업종〉 ① 끼임 위험기계보유 제조업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② 폐기물처리업 ③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 심사 과정에서 위험성 지적 기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1~12월

[현장실습생 지원 체계]



다. 현장실습의 변경

- 1) 현장실습을 시작한 이후에 현장실습 협약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 학교, 학생이 대면 또는 서면 합의를 거쳐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서식9** 를 3부 작성함.
- 2) 기업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서식9** 에 학생의 날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함.
- 3) 학교에 제출된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4) 학교는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승인 여부에 대해 기업에 통지하고, 승인된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 5) 승인된 「현장 실습 변경합의서」는 기업, 학생, 학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함.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예시)

1. 현장실습생

실습학생	과 3학년 반 번 성명: (인)
실습업체명	

2. 변경 내용

항목	기존 내용	변경 내용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	제3조 ① 현장실습 기간은 0000년 10월 1일부터 0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① 현장실습 기간은 0000년 10월 1일부터 0000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3조 ① 현장실습 수당 지급 0000년 10월 1일부터 0000년 10월 31일 까지 매월 31일 80만 원	제13조 ① 현장실습 수당 지급 0000년 10월 1일부터 0000년 10월 31일 까지 매월 31일 140만 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3주차 실무교육 :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NCS)	실무교육 : 무선통신망 장비 조립(기업특화)

이상과 같이 현장실습 운영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0년 월 일

(현장실습기관) OO주식회사 대표 _____(인)

(현장실습생) 성명 _____(인)

(직업교육훈련기관) OOOO고등학교 학교장 _____(인)

라.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지원

- 1) 상시 모니터링, 순회지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실제 현장실습이 협약과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이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실습 중단, 복교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함.
- 2) 안전보건 및 권익침해 사안이 중한 경우 교육청을 통하여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 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조치함.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사유에 따른 조치 방법]

사유	조치 방법
협약 내용과 다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미반영 시 학생 의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권익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조치 후 근로감독 요청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실습 중단을 요청한 경우	학생 상담 및 기업 협의를 진행한 후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교 여부 결정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 서식11 를 통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순서]

① 위반 내용 확인 • 시간초과, 휴일·야간 실습 확인 • 현장실습계약 미체결 또는 표준 협약서 미사용 • 주요사항 미준수 등 학교	② 복교 및 시정요청 • 확인 즉시 실습생 복교 조치, 위반사항을 기업에 통보 및 시정요청 • 학부모 통지, 상급기관에 사안 보고 학교	③ 근로감독 요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위반사항 통보, 근로감독 요청 • 야간실습, (성)폭력 등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 동시 진행 • 상급 기관에 사안 보고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④ 모니터링 • 근로감독 진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 근로감독 회신 결과 등 사안 보고 • 학생 및 학부모 보호·지원 학교,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⑤ 고발 • 근로감독 결과 벌칙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⑥ 최종결과 보고 •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경찰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 최종결과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 • 상급기관에 최종결과 보고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3)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기업에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음.

위반내용	부과벌칙
실습시간 초과 또는 휴일 미 부여 등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 행위	형사처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주요 사항 미준수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준용에 따른 기업의 책무와 벌칙 및 과태료는 75쪽 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안내 참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벌칙 및 과태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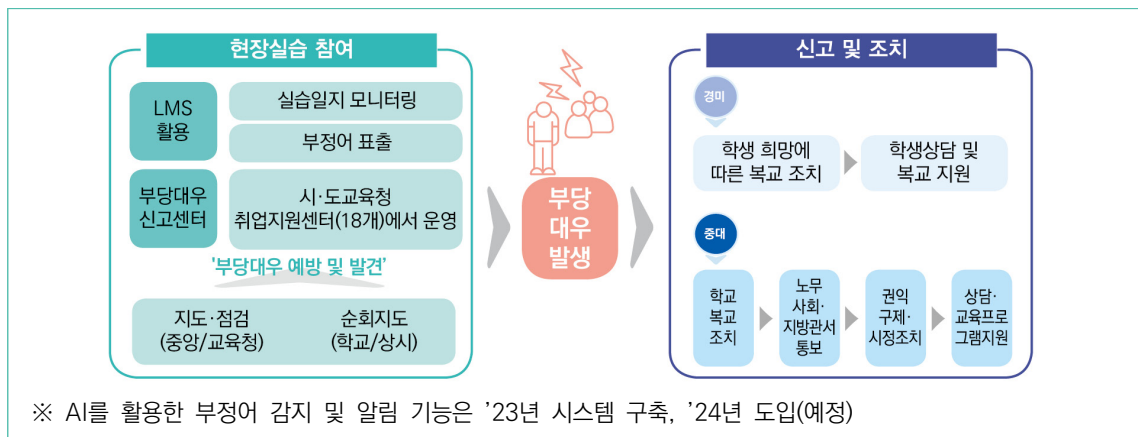
- ▶ **제26조(벌칙)**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27조(과태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주요사항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 → 시·도교육감,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 6대 표준협약서 사항별 과태료 부과권자(시행령 제23조)
 - 시·도교육감: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4) 학교는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를 통한 고충 상담 외에 학교 전담노무사 상담,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야 함.

- **(SNS 모니터링)** 현장실습 중 학교 교사, 취업지원관 등 주관으로 SNS(단체 톡 등)를 통해 현장실습생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LMS 모니터링)** 학교는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매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
- **(학교전담노무사)** 학교전담노무사와의 개인 연락을 통한 상담 실시
※ 학교는 현장실습 시작 전에 학생에게 학교전담노무사 연락처 및 상담 방법 안내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중앙·시·도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노무사와 연계하여 즉각적인 권익구제·시정조치 지원

5) 현장실습생 피해구제 과정에서 각종 비용 발생 시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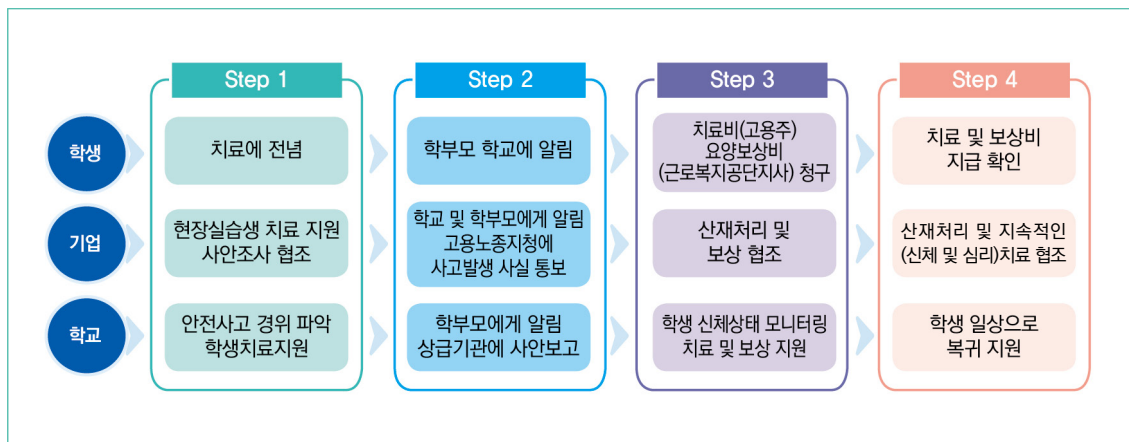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마. 안전사고 조치

- 1) 교사는 산업재해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기업발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함.
- 2)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생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생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업은 즉시 학부모,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함.
 -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사안 조사 및 산재 처리에 협조해야 함.
 - 학교와 기업은 각각 교육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학생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 전화 등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실습 사안보고서」[서식10](#)로 상세히 서면보고 해야 함.
 - 학교는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현장실습생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 ※ 비용 발생 시 현장실습 운영비 활용
 - 학교는 안전사고 처리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최종결과에 대해 [서식10](#)을 활용하여 교육청에 보고함.
 - ※ 안전사고 조치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입력

[안전사고 처리 절차]



현장실습 사안보고서

학 교	()고등학교 (☎ 000 - 000 - 0000)	
학 생	()과 ()학년 ()반 ()번 성명()	
기업체	기업명(업종)	○○산업(○○○○업), 선도기업 지정(00.00.00.)
	주소(전화)	○○광역시 (☎ 000 - 000 - 0000)
	실습 기간	20○○.00.00. ~ 20○○.00.00.(취업 전환 0000.00.00.~)

사 안 명	○○로 인한 ○○ ○○○○ 사고		
발생일시	20○○.00.00.() 00시 00분	장소	○○조립 라인
〈사고경위〉 사안 발생의 동기, 경과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1. 실습장 내의 구체적 상황, 목격자, 최초 조치 사항 등 2. 3.			
〈상황 발생 후 조치내용〉 시간에 따라 구체적 · 개조식으로 작성, 근로감독, 산재 등 포함 1. 0000. 00. 00:00 김00 학생 모친에게 연락, 교육청에 유선 보고 받음 2. 0000. 00. 00:00 00병원에 00학교 취업지원부장 방문하여 학생 상태 파악 3. 0000. 00. 00:00 검사 결과 0주간 입원 치료 필요			
〈관련 당사자 입장〉 학생, 학부모, 기업체, 학교의 입장 서술 1. 학생 : 치료 후 경과에 따라 학교 복귀 등 판단 예정 2. 기업 : 학생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울 예정 3. 학부모 : 치료 우선 진행 후 현장실습 지속 여부 판단 예정 4. 학교 : 학생 치료에 최우선 지원, 학생 학부모 방문 및 위로 진행			
보고일자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보고자(직 · 성명)	(직급) ○○○

Q & A

안전사고조치

Q 현장실습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장실습 중 산재를 당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상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가 다르므로(일반적으로 산재보상 범위가 더 넓음) 학교전담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 복교 프로그램

- 1) 학교는 현장실습생 복교에 대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복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2) 교사는 복교 사유를 진단하여 복교 유형별 필요한 상담, 교육 등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 [서식11](#), 현장실습 복교 프로그램 [예시8](#)

[복교사유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구분	사유	지원 내용
실습완료 복교 (복교사유서 미작성)	취업 미연계	추가 실습참여 및 취업 희망 시 실습기업 발굴,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
조기 복교 (복교사유서 작성)	학생 원인	진로상담, 취업 마인드 제고 및 직업윤리 교육, 취업 로드맵 제시, 취업 적성검사, 졸업생 특강, 직무체험·견학 등
	업체 원인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회복 지원 및 추가 실습처 발굴 기업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필요 시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요청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예시)

	결재	담 당	부 장	교 감
소 속	과 /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실습처명		실습처 전화		
기업현장교사 성명		기업현장교사 연락처		
실습기간		복교일		
복교 배경 및 과정(구체적으로 작성)				
기업현장교사 의견(OO부 김OO)				
학교 담당자 의견(OO부 이OO)				

※ 복교 배경이 기업에 있을 경우, 학교에서 기업 방문 후 '기업현장교사 의견'란에 기록 가능

보고일시 년 월 일

현장실습 복교 프로그램

학과:

학번:

성명:

차시	지도요소	지도내용		담당교사(예시)	실시일자
1	학생상담	• 복교사유상담 - 복교생의 고민과 애로사항 - 회사생활 돌아보기(장점과 단점)		김○○	
2	복교원인에 따른 마음 다지기	• 취업마인드재고 (학생원인 조기 복교)	전공관련 상담 취업마인드 함양 - 상담을 통한 자기성찰 - 자기극복 및 취업의지 고취	이○○	
		• 심리상담프로그램 (업체원인 조기복교)	의도치 않은 복교로 인한 상처치유 위로와 격려	박○○	
3	직장적응력 강화	•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자기관리 - 인간관계 팀워크 갈등관리 -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 인성지도		최○○	
4	직업윤리	• 직업의 소중함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 실습생의 의무와 권리		최○○	
5	진로상담 설계	• 맞춤형 진로설계 - 인생의 목표와 경로개발 -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찾기 - 10년 후 나의 모습		김○○	
6	평가 및 계획	• 소감문 작성 및 격려 - 재취업에 대한 도전의식		이○○	
복교생 프로그램 종료 후		추가 실습기업 발굴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		박○○	

8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현장실습 종료 -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IFIVE)에서 현장실습 완료 내용을 입력함. 나. 현장실습 완료 후 취업전환 - 취업전환학생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도움. - 참여·선도기업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전환 적부를 심의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취업전환 시기를 명확히 함. - 참여기업의 경우, 졸업 전 취업전환이 될 경우 현장실습운영 위원회에서 취업전환 적부심의를 하여야 함. - 출결일지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를 하며, 2월 말까지는 추수 지도를 실시함. 다. 현장실습 성적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식(정규교과, 대체, 교과외)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성적 처리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현장 실습 내용을 기재함.	서식12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예시) 서식14 취업전환 동의서 서식7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서식15 취업전환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 서식13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 예시)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찍어 학교에 제출함.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기업현장교사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을 신청함. - 현장실습생의 취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학부모, 학교와 상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취업전환 학생에 대하여 졸업할 때까지 출결일지를 학교로 제출해야 함.	서식13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 예시) 참고 현장교육 지원금 신청방법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IFIVE)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서식7 현장실습 (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학생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학생은 LMS 작성완료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학생 및 학부모는 취업전환을 위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전담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서식12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예시) 참고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방법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IFIVE)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서식14 취업전환 동의서
노무사 (산업안전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가 취업전환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도움.	

가. 현장실습 종료

-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서식12, 참고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방법(HIFIVE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상에 현장실습 완료처리는 현장실습 지원금 및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지급에 필수 선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해야 함.



- ※ 현장실습 평가서 서식13, 참고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방법(HIFIVE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예시)

이름	(인)	학과명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실습개요 및 목표						
실습내용						
현장실습 만족도	항목별 문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업(기관)의 시설과 환경은 만족스러운가?	5	4	3	2	1
	실습내용은 전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	4	3	2	1
	실습장의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5	4	3	2	1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는 교육에 충실했는가?	5	4	3	2	1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가?	5	4	3	2	1
향후 진로계획						
건의사항	※ 현장실습 만족도 불만족(2 또는 1) 시 필수 기재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기업용,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

소 속	○○고등학교 ○○과 0반 00번						이 름		
평 가 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100
실습 과제 수행	1	관련지식	10	9	8	7	6	/40	
	2	무선통신망 운용 지원 (2002020309_14v2)	10	9	8	7	6		
	3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14v2)	10	9	8	7	6		
	4	무선통신망 장비 조립 (기업특화교육)	10	9	8	7	6		
태도	1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2	협동심	10	9	8	7	6		
	3	사규 및 직장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 관리	1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2	안전수칙 이행	10	9	8	7	6		
	3	장비 및 기구정돈	10	9	8	7	6		
총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총평									
회사명: 평가자 직위: 성명: (인) ○○ 고등학교장 귀하									

나. 현장실습 완료 후 취업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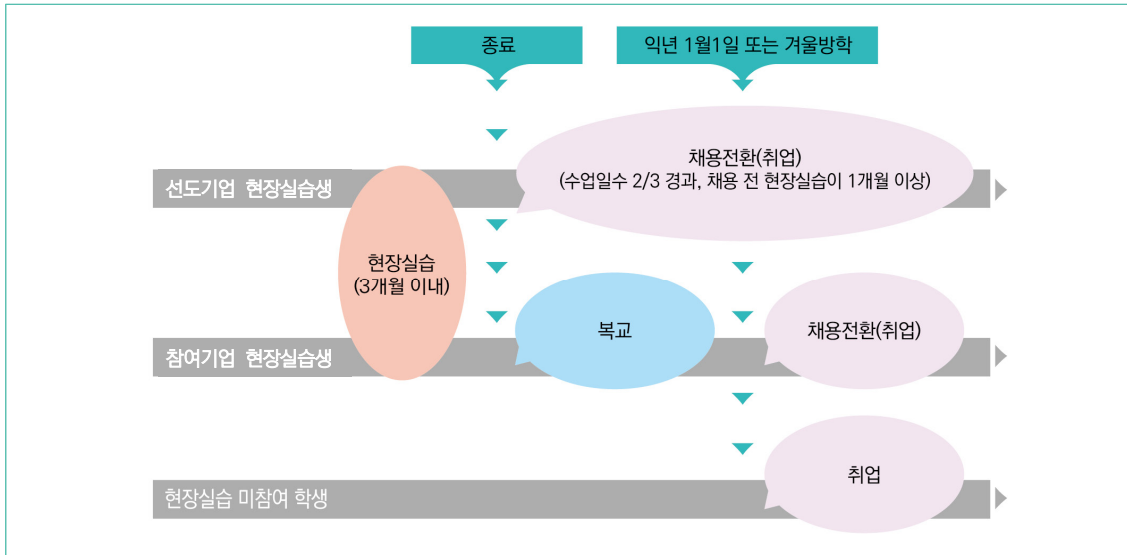
- 1) 참여기업 현장실습생은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 취업으로 전환 가능함.

※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전에 현장실습이 종료될 경우, 복교한 후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 취업으로 전환 가능함.

- 2) 선도기업 현장실습생은 수업일수 2/3 경과 시점부터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단, 취업 전환 전 현장실습을 1개월 이상(휴무일 제외 20일 이상) 참여해야 함.

- 3)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도 참여기업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 취업 가능함.



- 4) 학생 및 학부모는 현장실습생의 취업전환을 위해 취업전환 동의서 **서식14**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전담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을 작성함.

- 5) 학교와 학교전담노무사는 학생 및 학부모와 기업 간 근로계약 체결을 도와야 하며, 계약 내용상에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함.

- 6)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취업전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채용전환 입력 방법: '현장실습모니터링입력->해당학급->학생정보관리'에서 채용 전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취업 증빙서류는 선택사항)

- 7) 학교는 학교장 내부 결재를 통해 취업전환 된 학생의 취업전환시기를 명확히 하고, 출결일지 등 기업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를 함.

- 8) 학교는 학생이 취업 전환되더라도 2월 말까지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상태, 부당대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함.

※ 학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전환이 된 이후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 취업전환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 **서식15** 참고

- 9) 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전환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해야 함.
- 10)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취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학부모, 학교와 상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11) 기업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출근부 등 출결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현장실습(취업전환) 학생 출결일지 **서식7** 참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취업전환 입력방법]

2022 학년도 3학년 4학기 1반 학생 정보 목록

- 현장실습 관리(도움말) :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현장실습생으로 등록합니다. (출석부와 동일한 학생번호 부여 및 관리)
- 현장실습 관리(도움말) : 이력서 및 (현장실습) 배움통장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합니다.
- 취업 희망 여부 : 현장실습 기간 중 취업희망을 등록합니다. (취업 희망시에는 선택사항입니다)
- 취업 희망 일자 : (취업희망)에서 취업희망 일자 등록 가능합니다.

1. 2학년은 취업자 입력하지 않으며, 취업희망여부와 현장실습 종료로 입력합니다.
 2. 2학년은 현장실습에 참여 할 경우 기출, 생년월일, 우편, 개인정보 수집 허용 동의서를 입력하세요(제 도지교과, 병행실습 등)
 3. 취업희망 일자 등록 가능 일자입니다(입력)

전체학생, 전체취업자, 전체취업희망, 전체취업희망, 이력/생년월일, 취업일지, 산업안전교육 이수여부, 취업일지, 취업희망, 취업희망

1. [학생 현황] 섹션에서 학생을 선택합니다.

2. [학생 현장실습 관리] 섹션에서 [채용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생 현장실습 관리

1번 권 학생 현장실습 관리 (채용 / 삭제 가능한 실시간 반영됩니다.)

이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여부 입력

산업안전보건 / 근로권익 교육 이수여부

실습직전 특별교육 이수여부

이 학생의 취업희망 현장실습 관리사항(은퇴지도/취업희망여부/산재처리여부) 입력

업체명	실습분야 (참여/전도)	현장실습기간	전공 적합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06] 보건 의료 [06010204] 의료시술위생관리	2022.05.09 ~ 2022.05.27 3주 105시간 필수당 : 02만원 일반(산업체 채용약정형)	Y

입력하기 단기

• 농림 어업종사자일 경우 입력항목 설명 : [취업처 : 농림 어업종사자, 사업지등록번호 : 기타, 취업일지 : 이상일, 담당자 전화 : 이상일 전화번호, 주소 : 취업자 주소]
 • 통계방식 이후 선도기업이 아닌곳에 취업자 입력이 가능합니다.(2022년 12월 15일 이후 입력가능)

[‘고졸만Job’ 플랫폼]

- 고졸전용 취업지원 플랫폼 ‘고졸만Job’ **참고** <https://job.kosaf.go.kr>
- 직업계고(583개교) 정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트폴리오, 관계부처·기관이 제공하는 현장실습·고졸 채용 인센티브 정보 확인
- ‘현장실습 지도’를 통해 현재 현장실습 중인 기업을 실시간 확인 가능
-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약 10만개 이상의 고졸 채용 정보 및 기업 정보 제공

취업 전환 동의서

취업전환 학생	_____과 3학년 _____반 _____번 성명: _____
---------	------------------------------------

□ 취업 전환 관련 확인 사항

취업 전환 업체명		연락처	
근무장소			
취업전환일자	0000. . .		
근무시간		근무조건	시급/월급/연봉
담당부서		담당업무	

위 본인과 보호자()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취업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의 「취업 전환 관련 확인 사항」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00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취업전환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

		담당	부장	교감	
	결재				
산업체명		추수지도일시	 ~		
주소		전화번호			
취업전환 학생	()과 ()번 성명 () ()과 ()번 성명 ()				
영역	지도 내용			예	아니오
근로 계약서	1. 근로계약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				
	2.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있는가?				
	가.	근로시간의 준수			
	나.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 여부			
	다.	근로계약 외에 업무 배치 여부			
	라.	급여 지급(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전액 지급) 여부			
취업전환 학생	1. 취업전환학생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2. 취업전환학생은 산업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취업전환학생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가?				
	4. 취업전환학생의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근무 환경	1. 취업전환 학생에 대한 안전 장비 지급 등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2. 현장실습 환경 및 여건은 안전보건 상 양호한가?				
근무 실태	* 취업전환학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① 근무 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시간초과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②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무 ()				
	③ 유해위험업무 배치 여부 ()				
	④ 위반사항 없음 () 생리휴가 미 실시 () 성희롱 등 () 폭행·폭언 등 () - 조치: 시정권고 () 근로감독 요청 () 복교 () - 결과: 시정완료 () 근로감독 실시 () 복교 ()				
기타의견(문제점, 애로사항 등)					
상기와 같이 추수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0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Q & A

겨울방학이후 취업

Q 현장실습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A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부터 현장실습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선도 기업으로 취업전환을 할 때에는 수업일수 2/3 시점 이후부터 가능하며, 취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현장실습을 1개월(휴무일 제외 20일)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Q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에 취업하지 않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A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에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가능하며, 현장실습 협약 체결, 수당 지급 등 모든 방법과 절차 또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 졸업일까지 가능하며, 현장실습 협약 내용과 관계없이 현장실습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 종료 됩니다.

Q 취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야간 근무도 가능한가요?

A 학생이 만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전환한 시점에 만 18세 이상인 학생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40시간과 야간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학교 및 교육청은 관리감독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 학생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 겨울방학 또는 익년 1월 1일 이후 현장실습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현장실습 연계 취업한 학생과 동등하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선도기업의 취업전환

Q 선도기업에 취업전환하기 위한 수업일수 2/3를 계산할 때, 학생 개인별 출결을 고려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이 수업일수 2/3 시점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결석을 3일을 했다면 10월 14일부터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 실제 출결에 따라 '수업일수 2/3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 A

Q 취업으로 전환한 이후, 학생의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과 같은 방법으로 출결 처리합니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는 '현장실습 연계 취업'으로 입력합니다.

Q A기업에 현장실습을 1개월 이상 한 학생이 선도기업인 B기업으로 취업전환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선도기업에 취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월(휴무일 제외 20일 이상)의 현장실습 기간이 필요하며, 다른 기업에 취업전환을 하려면 해당 기업에서 새로이 1개월의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기업에서 현장실습 최대 가능 기간인 3개월을 이미 이수하여 추가로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에서 추가로 현장실습이 불가하므로 취업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과실 없이 기업의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어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기업의 자회사로 취업전환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 기업과 취업전환 기업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본점과 지점 관계로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기업과 취업전환하려는 기업에서의 직무가 동일하고, 취업전환하려는 기업 또한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업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은행 중앙회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지점으로 취업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의 취업전환

Q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도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전환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도제 기업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또는 취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일반 기업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및 취업전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도제 기업이 선도기업인 경우 수업일수 2/3 시점, 참여기업의 경우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부터 취업전환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취업전환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의 경우, 취업전환 전에 이수해야 하는 4주간 (20일)의 현장실습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 기업이라고 하여 현장실습과 취업전환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4주간(20일)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만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산업체 채용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Q & A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교내 프로그램 중 기업 관계자가 아닌 학교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으로 분류하되, '교내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학교 교사에 의한 지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Q

부사관에 합격하여 부사관 학교에 입교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처리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고, 임관 시점이 자격증 취득 여부 또는 졸업일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 기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Q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계 교육형으로 처리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합니다.

9 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현장실습 운영 결과 확인 - 현장실습 종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근무환경 만족도 - 학생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학생의 권익침해 여부 - 기업의 개선 요구사항 - 학생으로부터 취합한 건의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중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함. 나. 현장실습 자체진단 실시 - 현장실습 계획 대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함. - 학교단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다.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개최 -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학생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평가보고회를 진행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논의함. - 최종 심의 및 의결한 후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반영함. 라. 결과 공유 및 확대 - 학교 자체진단 결과, 학생 만족도, 향후 보완 방안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함.	서식12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예시) 서식 8 순회지도결과 보고서 서식13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 예시) 서식16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예시)
관리자 	현장실습 평가보고회를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함.	
기업 	학교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치함.	
학생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현장실습 중 권익침해 여부를 학교에 알리고, 건의사항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함.	

[세부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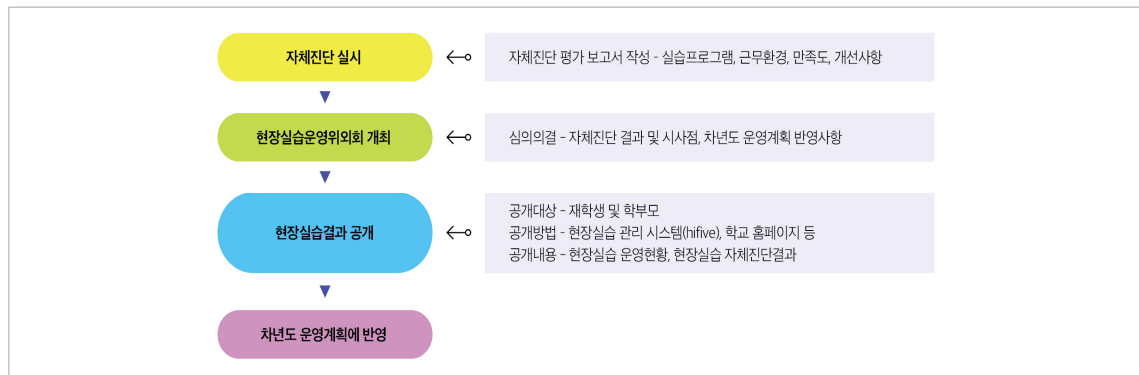
가. 현장실습 운영 결과 확인

1) 학생의 현장실습 종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확인해야 할 서류	확인 내용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예시) 서식 12	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근무환경 만족도 학생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현장실습일지(LMS) 모니터링 참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활용 매뉴얼 (HIFIVE 홈페이지/현장실습자료실/61번 참조) 및 애로사항
순회지도결과 보고서 서식 8	학생의 권익침해 여부 파악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서식 13	미흡에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기업의 평가자와 면담하여 개선 요구 사항 파악

나. 현장실습 자체진단 실시

1) 교사는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계획 대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6** 를 작성해야 함.



- 2)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와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습에 대한 총평과 시사점을 학교단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6** 에 기록함.
- 3) 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라도 학생의 권익침해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4) 학교는 학생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중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함.
- 5) 기업은 학교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함.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예시)

		담당	부장	교감	
결재					
산업체명	현장실습기간		. . . ~ . . .		
주소	전화번호				
현장실습생					
영역	확인 사항			예	아니오
실습일지 (LMS) 모니터링 확인	1. LMS 모니터링 결과 애로사항이 있는가?				
	애로사항 종류 및 원인 파악: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확인	2.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에 '아니오'로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아니오'로 체크된 항목과 그 이유:				
	3. 안전사고나 권익침해 위반사항에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안전사고 혹은 권익침해 위반사항:				
	조치 및 결과: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학생용) 확인	4.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의 만족도에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에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불만족'의 이유: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확인	5. 학생을 평가한 영역 중에 '미흡'에 체크된 항목이 있는가?				
	'미흡'에 체크된 항목 및 이유(기업 평가자와 연락하여 기록):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점은?				
	학생이 현장실습 종료 후에 느낀점은?				
	학생의 개선요구 사항은?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교사의 총평 및 차년도 실습 시 시사점은?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산업체의 자체진단 결과를 보고합니다.					
20○○년 00월 00일					
현장실습 담당교사				성명:	㉠

※ 학교 현장 상황에 맞춰 수정사용 가능함

다.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개최

- 1) 학교는 현장실습 ①자체진단 평가보고서, ②학생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③현장실습 운영 현황(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출력), ④만족도 조사 결과(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출력)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평가보고회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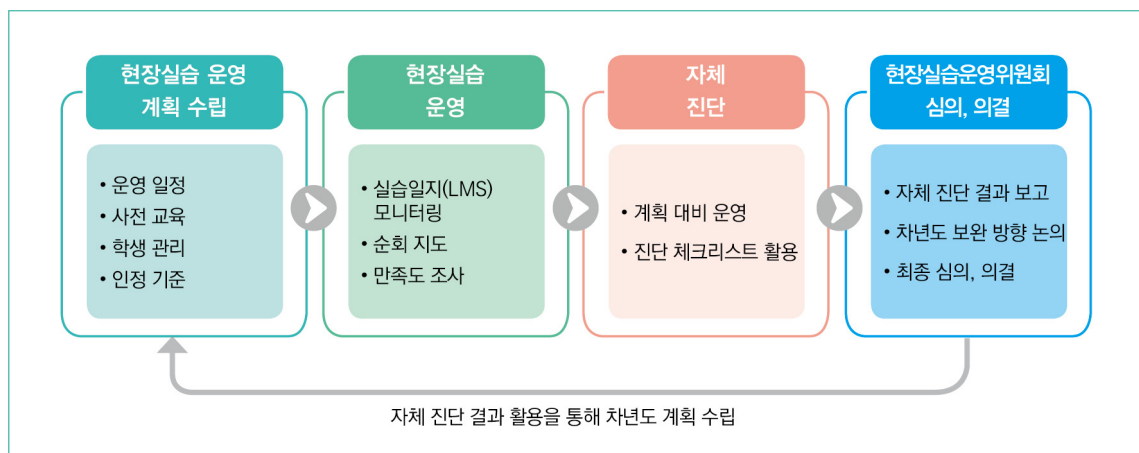
※ 학사 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되기 전에도 평가보고회 개최 가능

- 2)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 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개선 방안을 논의함.

※ 연초에 수립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토대로 평가 실시

-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를 최종 심의 및 의결한 후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반영함.

[현장실습 운영 환류 체계]



Q & A

현장실습 평가를 위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Q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요?

A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 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의 현장실습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라. 결과 공유 및 확대

- 1) 학교는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제진단 평가 결과, 학생 만족도, 향후 보완방안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함.
- 2) 결과의 공유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함.

* (결과 등록 경로) [HIFIVE 로그인] → [학교알림판] → [학교소식]에 등록

III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운영

1.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2.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형태
3.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개요
4.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5.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고려 사항

1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과정임.
- 학교 또는 기업이 일정 요건(시설·기자재, 강사, 교육 종료 후 채용연계 여부 등)에 부합한 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실무중심의 전공 심화 및 전환 과정으로 운영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이외 유형(산업체 채용형 등)에 가까운 현장실습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또는 부처별 지방 관서에서 지정한 과정,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과정, 산업별 협의체·경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과정 등이 있음.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기관 예: 폴리텍, 전문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공동실습소, 기업 연수원 등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예시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AI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과정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한국나노기술원이 주관하여 6개월 교육과정 이수 후 반도체 장비 회사 취업 연계 과정

가.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대전, 수원, 경북, 대구 교육청이 지원하여 지역별 기술원에서 운영
- (교육내용) 나노 반도체 장비운영 및 공정기술, 측정분석에 대한 체험학습 운영
- (교육기간 및 시간) 주 5일(월~금) 530시간 교육을 진행
- (교육대상) 졸업 즉시 나노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자(취업 서약서 제출자)
- (관련 정보) <https://www.etnews.com/20211229000063>

나. 울산, 경남지역 혁신플랫폼(MTC(Meister Training Center) 사업)

- (운영기관) 경남교육청 주관부서(진로교육과, 중등교육과)와 울산·경남지역 혁신플랫폼 내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이 연계하여 운영
- (교육내용) 5개 MTC 참여 대학별(창원문성대:미래자동차, 연암공대:스마트기계, 거제대:친환경스마트 선박, 한국승강기대:스마트승강기, 동원과기대:스마트냉동공조설비)로 특화 분야별 대학교수, 현장실무 전문가, 기술 명장 등이 책임 교육 실시
- (교육기간 및 시간) 9~12월(총 3개월)
- (교육대상)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 (관련 정보) <https://blog.naver.com/gn-platform/222482333712>

다. 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인공지능협회

- 부산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연계한 AI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원사 및 협력사에 취업 매칭
- (교육내용 및 기간) AI 실무 / 3주

2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형태

가. 전공 심화 과정

- 전공 심화 과정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시설·강사·교육과정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전공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편 취업을 위한 기업 매칭이 가능해야 함.
- 학교는 개설되는 연계 교육과정인 전공 심화 과정인지, 전공 전환 과정인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공 전환자가 심화 과정에 신청하는 등의 혼선을 방지해야 함.

나. 전공 전환 과정

- 전공 전환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연수원 등)의 입문자용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함.
- 전공 전환을 위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했더라도 취업 전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함.

※ 학생의 직무적합도(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직무와의 적합성) 검증, 4주(20일) 이상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채용 예정 산업체로 취업전환에 대한 적부 심의(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다. 우수 교육기관 연계 과정

- 중앙행정기관 혹은 기업, 기업협회가 주최하여 진행하는 연계 교육 혹은 학교에서 발굴한 우수 교육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연계 교육으로 채용을 전제로 한 전공 중심 현장실습임.
- 우수 교육기관 연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함.

3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개요

[업무 요약표]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교사 	가. 기관 발굴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기관 발굴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적정성 확인 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생 선발방법, 학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확인하여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함 - 학교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기관 선정 심사 및 승인 요청함 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준비 - 교육청 승인 결과(기관등록)를 확인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대한 안내(설명회, 가정통신문 등) 등을 통해 학생 선발을 추진함. - 현장실습 실시 전 학생·학부모로부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받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함. 라.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 기관에 현장실습 실습일지를 작성을 요청하고, 매달 말 회신을 통해 학생 개별 출결을 NEIS에 입력함 - 참여 학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순회지도를 실시함	서식17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18 연계 교육기관 현지 실사 점검표 서식19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서식20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7 현장실습(취업) 출결일지 서식2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기관 	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준비 - 학교의 방문 또는 교육청의 현장실사 등에 협조함 - 학교와 협의를 통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함 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 안전·보건상에 위험 및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함 - 현장실습(취업) 출결일지 서식7를 작성하여, 매월 말 학교에 제출함 - 학교, 교육청 등의 순회지도 등에 협조함	서식17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식20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7 현장실습(취업) 출결일지

담당자	업무 내용	관련 자료 찾기
학생 	◦ 사전 설명을 통해 교육정보를 확인하고 교육과정(기관)을 선택함 ◦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회원 가입함 (아이디, 비밀번호 등 확인)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 체결을 체결함 ◦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의 LMS 활용 시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 ◦ 교육완료 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서식12 작성하고 LMS 활용 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함	서식19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서식20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12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용)
교육청	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기관 승인 ◦ 학교(교육청 자체 발굴 포함)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기관 승인 요청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현장실습 운영 적정성, 현장 실사(필요시)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함 ◦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 후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에 해당 기관을 등록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함	서식18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4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절차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기관 및 대상 학생 선정 등에 관한 운영 계획의 적절성 심의하고 교육청에 승인 요청(학교) → 운영기관 승인 및 등록(교육청)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체결(학교·학생·기관)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관련 서류 및 참여 학생 등록·관리(HIFIVE)(학교) → 교육 참여 및 순회지도(학생·학교) →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 만족도 등록(학교·학생)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연계교육 현장실습의 운영계획서, 학생 선발 방법, 운영기관의 적정성과 채용연계 전제 시 직무적합도 검증 기준과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 후 교육청에 운영기관 선정 심사와 승인을 요청함.
 ※ 교육청에 승인 요청 시 필요 서류는 시·도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름
 ※ 연계 교육기관의 적절성은 연계 교육형 현지실사 점검표 **서식19**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교육청은 학교의 승인요청을 토대로 운영기관 현장실사(필요시)를 통해 운영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학교에 통보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해당 운영기관을 등록함.
 ※ 교육청은 교육기관이 아닌 산업체 현장에서 채용형 현장실습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내용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과정을 승인
- 학교는 교육청 승인 이후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동의서 **서식19**를 받고 연계 교육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20**,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식17**를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에 등록하고 참여 학생도 함께 등록하여 운영·관리함
- 학교는 현장실습(취업) 출결일지 **서식7**을 교육기관에 전달, 매월 말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작성한 실습일지를 회신 받아 나이스 출결에 반영함(실습 종료 후 취업전환 학생도 졸업일 전까지 동일하게 운영)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LMS를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학교는 전화, SNS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함
- 학교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순회지도 **서식21**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기록하고, 교육 종료 시 참여 학생은 LMS를 통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등록서류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운영계획서, 순회지도 결과보고서이며 나머지 관련 서류는 학교 자체 보관함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등록(HIFIVE) 방법

① 현장실습 모니터링 → ② 학생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 → ③ 현장실습 입력할 반 선택 → ④ 학생 정보관리 → ⑤ 학생 이름란의 현장실습 클릭 → ⑥ 현장실습 추가 → ⑦ 교육기관 정보 입력 → ⑧ 교육 구분에서 일반 선택 후 연계 교육형 선택 → ⑨ 협약서 **서식20**, 운영 계획서 **서식17** 업로드

특성화고·막스스터링 호텔

하이패시브

가

1

현장실습 모니터링

취업실태조사

학교알림판

업무협약

참여(선도)기업

현장실습 LMS

혁신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컨설팅

학교정보 | 학교관리

2

학생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

현장실습 교육청전송 | 현장실습 지원금 관리(현장교사) | 현장실습 지원금 관리(학생)

학생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

4

검색

학생 정보관리..

졸업일

학년도 2022

학년

학년도	유형	학년	반	NCS	총원	현원	현원 (남)	현원 (여)	전학 및 기타	제외 인정자	취업 희망자	취업 희망자(%)	취업 비희망자	비고
2022	특성화고	3	미용과 1	[12] 이틀 숙박 여행...	24	23	0	23	1	0	18	78.3	5	
2022	특성화고	3	패션디자인과 3	[18] 섬유 의복	25	25	6	19	0	0	16	64	9	
2022	특성화고	3	디자인콘텐츠과 4	[08] 문화 예술 디자인...	22	22	2	20	0	0	9	40.9	13	
2022	특성화고	3	바이오소프트웨어과 5	[17] 화학	23	23	1	22	0	0	9	39.1	14	
2022	특성화고	3	스마트경영 6	[02] 경영 회계 사무	17	17	1	16	0	0	5	29.4	12	
2022	특성화고	3	스마트경영 6	[02] 경영 회계 사무	22	22	2	20	0	0	7	31.8	15	
2022	특성화고	3	융합소프트웨어과 7	[20] 정보통신	24	24	11	13	0	0	16	66.7	8	

[illegible]

5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고려 사항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진학을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단순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학생과의 충분한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이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중 전공전환 과정은 전공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으나,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겨울방학 이전에 취업전환은 불가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가능 기간은 개별 학생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및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개월(60일) 이내 참여가 가능함. 단, 3개월 이상의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운영도 가능함.
-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모집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전공과 실습 과정상의 직무가 일치(전공심화과정)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전공전환과정)를 거쳐 4주(20일) 이상의 실습에 참여·이수하고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취업전환 적부 심의를 통해 취업 전환이 가능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중 전공전환 과정을 통한 취업을 계획하는 경우, 채용연계를 전제*로 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되, 직무적합도 검증, 4주 이상의 실습,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취업전환 적부 심의 완료 후에 취업전환이 가능함(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전 취업 전환은 선도기업에 한하여 가능)
* 채용연계를 전제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전공전환 과정)은 계획 수립 당시 직무적합도 검증 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시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후 취업전환의 시점은 참여기업은 동계방학 및 1월1일 이후, 선도기업은 수업일수 2/3 경과 이후 가능함
※ 취업전환 한 학생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는 추수지도(이 경우 취업전환 학생 추수지도 결과보고서를 활용)를 실시함.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등의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적용하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적용함.
※ 단,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시에 작성할 수 없음
※ 채용을 이유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관련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작성, 직무적합도 검증, 시·도교육청 협의체(선도기업 승인) 심의,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사에 대한 행정적 절차 생략이 가능함. 다만,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노무사 협조 하에 실시 가능
-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에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적용함.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내용
1. 기준 및 방법 설정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기관(공동)	학교와 기관은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경우, 직무 적합도 검증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설정 ※ 예) 관련 자격증 취득 확인, 관련 동아리 활동 내역 확인,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연계성, 학생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면접 등
2. 기준 및 방법 심의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심의	시·도 교육청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의 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심의
3. 검증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학생 모집	기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학생 직무 적합도 검증

Q & A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비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가능 여부

Q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전공 전환 과정으로 진행한 학생이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전공 전환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여도 그것을 근거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추가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반드시 전공과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타전공으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이 주 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공 전환 과정 교육에 대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 인정 여부

Q 전공 전환 과정에 참여 후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으로 선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겨울방학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A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선도기업이라고 해도 겨울방학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채용연계를 전제로 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되, 모집단계에서부터 전공이 일치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 수업일수 2/3가 지난 시점부터 선도기업으로 취업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기관 선정 시 사전실사 필수 여부

Q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할 때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한 사전 실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A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며, 실제 산업현장에 나가지 않는 만큼 현장실습 운영 기관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는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임에도 산업안전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이 판단하는 경우 사전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식 17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양식을 수정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 혹은 업체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가 있는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기관명		
주소	기업	
	교육장소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20○○.00.00. ~ 20○○.00.00. (584시간, 4개월)
현장실습 대상		직업계고 IT·SW 분야 졸업예정자
관련 직무분야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 공공기관 연계 사업인 경우 관련 사업에 기관명, 사업명 작성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 현장실습 커리큘럼

구분	내용
과정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IoT 시스템 개발
분야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목적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한 인재개발
대상	직업계고 IT·SW 분야 졸업예정자
필요 역량	파이썬, DB프로그래밍, DB시각화
취득 역량	머신러닝 기반 분석 모델링, IoT 서비스 개발 등
관련 취업처	데이터분석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IoT 시스템 전문가 등
프로그램 개요	빅데이터를 활용 IoT서비스 개발, 프로젝트형 IoT 서비스 개발

※ 여러 과정을 운영 시 칸을 추가하거나, 번호를 매겨서 표를 추가하여 작성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주차	프로그램 세부내역			교육시간
	내용	방법	장소	
1주차	비파괴 검사 개론 , 안전, 보건, 직업기초능력교육	강의	601호 강의실	35
2주차	금속재료 , 용접 개론	실습	601호 강의실	35
총 현장실습 시간				

□ 대상 학생 모집(선발) 계획(전공전환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직무적합도 검증 방법		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② ...
모집 및 선발 인원		모집 : 25명 , 선발 : 20명
대상 학년 및 학과		3학년 스마트 기계과
모집 기간		2000.0.0~2000.0.0
선발 방법		서류 심사, 대면 면접 등
모집 대상 학생		
순	학생 성명(학과-학년-반)	비고
1	홍00	관련 자격증 취득
2		
...		

서식 18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함.

연계 교육기관 현지실사 점검표

교육기관명		대표번호	
담당자(직위)		담당자연락처	
주소			
과정명		기간(총시수)	

실사항목	실사항목	실 사 결 과					비고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아주 미흡 (1-2)	
교육 목표	• 학생 진로와의 부합성 • 연계교육 협약 이행 가능 • 학생 부담 교육비의 적절성						
시설 환경	• 교육시설의 안전성 (구급조치, 피난대피로 확보 등) • 교육장의 청결 · 쾌적성 • 휴게 공간의 구비 • 주변 환경 유해성 없음						
교육 계획	• 교육목표 적합성 • 교육내용 수준의 적절성 • 이론 및 실습 비율의 적절성						
강사	• 강사의 전문성(해당분야 경력, 자격증 등) • 강사 1인당 학생수(15명 이내)						
교육 운영	• 교육기자재 적절성 • 실습 중 안전보호구 지급 • 교재의 적절성, 지급 여부						
학생 관리	• 상담 공간 존재 • 1일 및 시간단위 출결 관리 • 실습일지 작성 관리						

실사항목	실사항목	실 사 결 과					비고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아주 미흡 (1-2)	
취업 지원	• 교육기관의 취업연계 실적 • 확보한 취업처의 적절성						
합계							적절/부적절
기숙사	• 성별 분리 여부 • 야간 전담관리자 배치 • 일과후 및 주말 관리방안 • 사용료의 적절성						적절/부적절

※ 현장실사 결과 미흡 또는 아주 미흡인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격 판정

※ 합계 점수 42/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 가능

총 평	
-----	--

점 검 일 : 2000년 00월 00일

점 검 자 : _____(서 명)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

실습학생	_____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	----------------------------------

☐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실습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실습 기간	20__년 ____월 ____일 ~ 20__년 ____월 ____일 ()일 ※ 일 운영시간: ____		
실습 과정명		실습 장소	
실습 내용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관련 확인 사항」 및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에 동의합니다.

20__년 ____월 ____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 본 서식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 혹은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는 _____기관대표(이하 "연계 교육기관"이라 한다)와 _____학교 _____학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학교장 상호간에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 교육기관에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간 및 장소) ①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②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계교육기관"의 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경우 관련된 산업현장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방법 및 절차) ①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연계 교육과정에 의거 "연계 교육기관"이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한 연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때, 연계 교육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교육 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연계 교육담당자와 학교의 교사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③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 또는 학교의 요청을 수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연계 교육기관의 의무) "연계 교육기관"은 교육 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 연계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현장실습 연계 교육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교육훈련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연계 교육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학교가 현장실습 연계 교육의 이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 드러난 개선 및 변경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7.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제6조(학교의 의무) ①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앞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연계 교육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출결 상황을 매일 관리해야 하며, 그 상황을 학교에 보고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교육 기간 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계 교육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연계 교육기간 동안 해당 교육기관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제9조(연계교육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연계교육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하며,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연계 교육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교육훈련 1시간당 10분으로 한다. 단, 연속된 교육 훈련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③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연계 교육기관”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교육 실시, 교육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이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제13조(중식 및 용품제공) ①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계 교육기관”은 교육훈련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 보호구, 기타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복지후생)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며, “현장실습생”이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전담 사감을 배치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시간에 도 상시 보호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생”의 기숙사 출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평가) “연계 교육기관”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

제16조(포상)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 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 훈련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연계 교육기관”이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① “연계 교육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연계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을 지속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해지일 7일 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 교육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한다. 단, “현장실습생”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연계 교육기관”은 연계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취업처 알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료증명서) “현장실습생”의 연계 교육이 종료된 경우 “연계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수료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연계 교육기관”, “현장실습생”, “학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00. 00.

(연계 교육기관) 기관명

기관장 (인)

(현장실습생) 주소

성명 (인)

(학교) 학교명

학교장 (인)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결 재	담 당	부 장	교 감
기관명		지도일시	20 . . . (: ~ :)		
주 소		전화번호			
현 장 실습생	과 번, 성명 과 번, 성명				
영역	지도내용		예	아니오	비고
교육 운영	1. 당초 수립된 운영계획과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의 출결 사항에 대한 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양호한가?				
	6. 교육 담당자가 지정·배치되어 현장실습생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현장 실습생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교육기관에서 성실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4. 현장실습생의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사고, 권익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6.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7. 통학 또는 기숙사 생활에서 안전사고 요인은 없는가?				
교육기관	1. 현장실습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출결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통학 경로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가?				
	4. 실습장 내 시설 안전, 안전보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절차(학교 담당자, 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가?				

현장실습 실태	* 현장 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1. 현장실습 시간 1일 ()시간 2.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무 () 3. 위반사항:					
■ 학생 및 기업체 면담 내용						
교육기관면담 내용						
현장실습생 면담내용 및 전달사항						
종합의견 (애로사항)						
학생 만족도	참여 실습생의 교육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4	3	2	1
구 분	소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서명	
보고자						
동행자						
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						



부 록

- [부록 1]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 [부록 2]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 [부록 3] 기업 지원 혜택

방안	세 부 내 용	관련 자료 찾기									
현장실습 사전 준비 지원 강화	1) 현장실습운영 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및 학생 참여 확대 - 교원위원, 학부모, 학생,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table><tr><th>구분</th><th>구성 기준</th><th>정족수</th></tr><tr><td>현장실습 운영위원회</td><td>교원, 학부모,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7인 이상</td><td>구성원 2/3 이상 참여</td></tr><tr><td>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td><td>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td><td>구성원 1/2 이상 참여</td></tr></table> ❗ 학교전담노무사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단,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에 한해서 서면 의견 제출로 참석 대체 가능) * 학생: 3학년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 (학생 중 선발, 학생자치회장, 기타 대표 학생 등) * 학교전담노무사: 교육청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지정한 담당자(해당 공문 확인)로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여, 기업 사전 현장실사,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현장실습 기업 지도·점검 지원, 선도기업 코칭, 학생 순회지도 지원, 현장실습생 권익 침해 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구분	구성 기준	정족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원 2/3 이상 참여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1/2 이상 참여	◦ ‘현장실습운영계획 수립’ 세부 운영 내용 확인)
	구분	구성 기준	정족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각각 1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원 2/3 이상 참여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1/2 이상 참여								
	2)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의 학교·기업 공동 참여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당을 교사 및 기업관계자 대상으로 프로그램당 각각 5만 원 이내로 지급	예시1 현장실습운영 위원회 구성								
3) 학교·기업 컨설팅 실시	- 중앙/시·도 현장실습 컨설팅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학교 및 기업 대상 컨설팅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및 인식 제고 실시										
4) 현장실습 평가 내실화 및 환류 강화	- 학교는 자체진단 실시(전체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및 진단), 만족도조사·평가 결과 및 시사점 등을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 - 실습기업 정보 및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 자체진단 결과를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										

방안	세 부 내 용	관련 자료 찾기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1) 사전 현장실사 강화 - 모든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노무사가 참여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참여 확대 -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 공인노무사 및 산업안전전문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및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제출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및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제출는 사전 현장실사 결과를 선도기업 지정, 현장실습 가능 여부 등의 심의에 활용 2) 고용부 지도·근로감독 -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지도(컨설팅)·근로감독 실시 3) 중앙단위 정기 지도점검 -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지도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 권익보호 교육 강화	1) 사전교육 의무화 - 모든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노무사가 참여한 현장실사를 실시,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참여 확대 - 실습 직전 특별교육(의무) 신설 및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2) 현장실습 동아리 지원 - 업종별 위험요소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형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동아리 지원 3) 학교전담노무사 제도 운영 - 전체 직업계고에 학교전담노무사를 배정하여 현장실습과 노무관계 등에 대한 상시적 상담과 관리구제 지원,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및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여, 선도(참여)기업 사전실사 참여, 학생 및 교원 교육 활동 등 지원	◦ '사전교육 실시' 세부 운영 내용 확인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세부 운영 내용 확인
현장실습 기간 중 밀착형 권익 보호 지원	1) 신고·상담 강화 - 실습생 대상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표 참조)를 확대하고, 공인노무사와 연계하여 신고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원 2) SNS 모니터링 활성화 - 실습기간 중 학교 취업지원관교사 주관으로 SNS(단체톡 등)를 활용한 현장실습생 모니터링을 활성화	

법령	세 부 내 용	해석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업계고에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함.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함.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 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됨.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됨.

법령	세 부 내 용	해석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 계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과태료의 세부기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함.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현장실습 시간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시간 미준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선 학생보호 조치 후 형사처벌 절차(고발)를 진행하여야 함.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세 부 내 용	해석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산업체는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이후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8. 3. 27.>[본조신설 2016. 2. 3.] < 동 조항 개정 사항 > ※ (‘23.3.30. 본회의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3.10월 전면 적용” • (제1항, 제3항) 제1항에서「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됨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 (제2항_신설)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현장실습생에게도 ‘18세 미만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갱내근로의 금지’ 등 의무 부과 ◦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근로, 폭행 금지 등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

법령	세 부 내 용	해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3 6호)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동일하게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명시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으로 규정함. ◦ 현장실습생이 실제 수령하는 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기준에는 최저임금에 준하여 징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에 준하여 보상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산업안전 보건법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 사업주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생을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특례조항으로 규정함.

2023년 고졸 채용 및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 지원정책

구분		상세 내용	문의처
1. 고졸 채용 기업	1. 청년 고용 증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내용: 청년(만15세이상 29세이하) 상시 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 100% 공제	국세청 콜센터(126) 및 홈택스
	2.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대상: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번→8번)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우선대상 기업 사업주 ·내용: 최초 1년은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기술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특성화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고용기업 ·내용: 보증비율 90%~95% 적용 / 보증료 0.3%P~0.4%P 감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대표전화 (1544-1120)
2. 현장실습 참여 기업	5. 인력개발비 (현장실습 비용) 세액공제	·대상: 현장실습 참여기업 ·내용: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 식비, 교재비, 재료비의 세액공제	국세청 126
	6. 현장실습 기업 현장 교육 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현장교사 ·내용: 1인당 최대 210만 원(월 최대 70만 원)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지원 사업 상담센터 (1800-0499)
	7. 산업재해 예방 시설 용자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고용하면서 보험료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내용: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장기, 저리 조건 용자 지원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 (1544-3088)

구분		상세 내용	문의처
3. 현장 실습 선도 기업	8. 위험성평가 인정 인센티브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또는 선도기업 신청기업 ·내용: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현장실사 미 실시 및 선도기업 지정 가능	안전보건공단 1644-4544
	9.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점 수 가점 부여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내용: 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중소벤처 기업연구원 02-707-8224
	10.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 우대	·참여은행: 신한, 국민, 산업 ·내용: 기업대출 금리 우대(0.25%~1.3%) 등	시중은행별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문의
	11.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내용: 보증료율 0.1%p 차감 적용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12.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우대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내용: 매출채권 산출보험료 할인율 5% 적용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13.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 아래는 '22년도 내용으로서, '23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세부 내용은 반드시 '23.6월 공고에서 확인 필요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내용: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5점 또는 7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1899-3001
	14.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평가 가점 부여	·대상: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 기업 중 현장실습 선도기업 ·내용: 우대사항으로 심사시 선취업-후학습 분야 가점 5점 부여 등 ⇒ 선정 시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인증 혜택 제공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30개 지부·지사 •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44-415-3941
	15. 신용보증 기금의 경영 컨설팅 등 수수료 우대지원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내용: 4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컨설팅 수수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053-430-4684)
	16. 기술보증기금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내용: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5점 가점 부여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대표전화 (1544-1120)

(기준일:2023년 3월)

부 칙

1. 이 매뉴얼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후 개정 매뉴얼 배포 전까지는 이 매뉴얼을 적용합니다.

2023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학교용)

발행일: 2023년 5월 15일

함께 지은이: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
강철민(대전도시과학고), 민성욱(주산산업고), 송무형(장성향공과학고), 송지원(병천고)
전현미(세명컴퓨터고), 진선미(서울동구고)

발행처: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학교용

2023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

발행일

2023년 5월 15일

●

함께 지은이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
강철민(대전도시과학고), 민성욱(주산산업고), 송무형(장성항공과학고),
송지원(병천고), 전현미(세명컴퓨터고), 진선미(서울동구고)

●

발행처

교육부, 한국장학재단